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850-14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관련 법령집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2015.3





목 차

●●●●●●●●●●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관련 법령집

1. 정부조직법	1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67
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5
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3
5.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	253
▣ 한국농수산대학 기본운영규정	255
▣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281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07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3
8. 농림축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421
9. 농림축산식품부 기구별 영문명 및 기능	457
10.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현황	465

정 부 조 직 법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대통령	6
제 3 장 국무총리	7
제 4 장 행정각부	9
부 칙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

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실)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 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4조(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11.19.>]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1.19.>]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4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⑥ 삭제 <2014.11.19.>
 - ⑦ 삭제 <2014.11.19.>
- [제목개정 2014.11.19.]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8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삭제 <2014.11.19.>

③ 삭제 <2014.11.19.>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민안전처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무	인사혁신처장
안전행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의 소관사무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	경찰청장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안전행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또는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또는 경찰청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3조(중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 후보자 (교육부장관)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제5조(201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이체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 <2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2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3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5>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4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46>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4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 행정자치부장관

<4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

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 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7항, 제69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6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

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

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94조 후단, 제95조제1항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제155조의2제1항·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제138조제3항 본문,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17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7>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제4항, 제1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

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8항·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 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 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의4제1항·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제2항, 제55조의5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

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3>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으로 한다.

<12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항, 제16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을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

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27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130>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1>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해양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① 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3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5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38>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

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

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며,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6> 소방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

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7항·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제10항·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제8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제4항·제6항, 제40조의2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3항, 제8조제5항 단서,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양경찰서의"를 "해양경비안전서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11호·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3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3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10제1항,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8조, 제38조의2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본문,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1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

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0의2. 국민안전처장관

<166>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0의2. 국민안전처장관

<16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2. 국민안전처장관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각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계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 "기획재정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한다.

<1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로 한다.

<17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8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부령"을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2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제5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3>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를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18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8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2>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육성 및 지원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9>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3>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제28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국세청·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세청"으로 한다.

<23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9>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를 "해양기상신호표지"로 한다.

제12조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0>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호, 제105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

제15호의3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조명·선박관제에 관련된 시설 등"을 "조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1> 법률 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 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합정"을 "국민안전처합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 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등"을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246>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8호·제9호,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4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2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1호·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제31조제4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가"를 "행정자치부가"로 한다.

<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1 장 총 칙	69
제 2 장 조직관리	74
제 3 장 정원관리	77
부 칙	8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정	1977. 3.26.	대통령령	제 8517호
일부개정	1981.11. 2.	대통령령	제10496호
전부개정	1984. 8. 9.	대통령령	제11484호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25호
일부개정	1994. 1.17.	대통령령	제14102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일부개정	1995. 4.12.	대통령령	제14620호
일부개정	1996. 6.29.	대통령령	제15035호
일부개정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1호
타법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41호
타법개정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4호
타법개정	2002. 7.13.	대통령령	제17669호
일부개정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7호
타법개정	2005.11. 4.	대통령령	제19113호
타법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51호
타법개정	2005. 2.25.	대통령령	제18715호
일부개정	2005. 3.24.	대통령령	제18745호
일부개정	2006. 6.15.	대통령령	제19526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2호
타법개정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4호
타법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731호
타법개정	2009. 3.31.	대통령령	제21384호
일부개정	2009. 4. 6.	대통령령	제21406호
타법개정	2010. 6.15.	대통령령	제22202호
타법개정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1호
일부개정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3호
타법개정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4호
타법개정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1호
타법개정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2호
일부개정	2012. 9. 5.	대통령령	제24083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84호
일부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62호
일부개정	2014. 3.11.	대통령령	제25228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 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9.4.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2006.6.15., 2014.3.11.>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1990·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직제시행규칙)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13.3.23.>

②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2006.6.1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1.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그 분장업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종류
3.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5. 개방형직위의 지정
6.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8.2.28.]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① 행정기관의 업무중 기획·조정 또는 통계기능에 속하는 업무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집행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타의 집행업무는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② 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담당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6·7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기관에는 최소한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배정한다. <개정 2006.6.1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국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4.6.>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제7조 삭제 <1990·12·31>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7., 1998.2.28., 2005.3.24.,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소요기구와 정원에 관한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연도중에 그 소요시기에 따라 행한다. 다만, 다음연도 1월중에 시행하여야 할 기구와 정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중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1·17, 1995·4·12, 1998·2·28, 2008.2.29., 2013.3.23., 2014.11.19.>

⑤직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직제등이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 없이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17, 1998·2·28, 2008.2.29., 2013.3.23., 2014.11.19.>

⑥직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를 초과하여 개정할 수 없다.

제8조의2(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1998·2·28]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제9조의2 삭제 <1998·2·28>

제10조(직제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한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3.3.23., 2014.11.19.>

1. 직제 등의 안
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3. 삭제 <2005.3.24.>
4. 소요정원설명서
5. 삭제 <2005.3.24.>
6. 삭제 <2005.3.24.>
7. 삭제 <2005.3.24.>
8. 삭제 <2005.3.24.>
9. 삭제 <2005.3.24.>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차관보) ①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②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①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개정 1995.4.12., 2005.3.24.>

②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

③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3.24.,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④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설 2013.3.23.>

[전문개정 2005.3.24.]

제15조 삭제 <2005.3.24.>

제16조 삭제 <2005.3.24.>

제17조 삭제 <2005.3.24.>

제17조의2 삭제 <2005.3.24.>

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①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4.11.19.>

③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개정 2011.7.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4.6.11.]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

⑤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3.24.>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 2014.11.19.>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31.]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제22조 삭제 <1998·2·28>

제3장 정원관리

제23조(정원의 배정) ①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24., 2006.6.15., 2013.12.11.>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정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실장·국장의 직위 또는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8>

제23조의2(복수직급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수직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공무원 밑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2.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공무원 밑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4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 공무원 밑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 공무원 밑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11.7.4.]

[제목개정 2014.3.11.]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5.3.24., 2006.6.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4.>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7.13., 2005.3.24., 2011.7.4.>

④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6., 2013.12.11., 2014.3.11., 2014.11.19.>

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별도정원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4.6.11.]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직제시행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훈령·예규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하며, 임시조직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9.5.]

제25조(한시정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에 따라 한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한시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및 한시정원에 관한 관련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한시조직"은 "한시정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4.]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수 있다. <개정 1996·6·29, 1998·2·28>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0·12·31, 1994·1·17, 1996·6·29, 1998·2·28, 2006.6.15., 2007.1.5., 2008.12.31., 2011.3.7., 2011.7.4., 2011.12.21., 2013.3.23., 2013.12.11., 2014.11.19.>

1. 일반직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2013.12.11.>
3. 경찰공무원의 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6.15.>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2.2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본조신설 1995.4.12.]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17., 1996.6.29., 2004.6.11.>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6.11., 2009.4.6., 2014.3.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복수 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7.4., 2013.3.23., 2014.3.11., 2014.11.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제27조의2(조직진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진단을 실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4.,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1994·1·17]

제28조(정원감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정원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전문개정 1998·2·28]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③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5.3.24.]

제29조의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 "유동정원"이라 한다)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동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을 중앙행정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동정원의 지정계급 및 지정비율 등 유동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7.4.]

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8.2.29.]

부 칙 〈제11484호, 1984.8.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225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4102호, 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1> 생략

<27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3> 내지 <327> 생략

부 칙 〈제14620호, 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35호, 19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691호, 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105>생략

<106>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109>생략

부 칙 〈제16341호, 1999.5.2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팀·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생략

부 칙 〈제17534호, 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부 칙 〈제17669호, 2002.7.13.〉
(계약직공무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생략

부 칙 〈제18427호, 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8715호, 2005.2.25.〉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제18745호, 2005.3.2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113호, 2005.11.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제19251호, 2005.12.30.〉

(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부 칙 〈제19526호, 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

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직급별·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9792호,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9824호, 2007.1.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소방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 칙 〈제20731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 〈제21384호, 2009.3.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1406호, 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202호, 2010.6.15.〉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과견의 협의 시"로 한다.

부 칙 〈제22691호, 2011.3.7.〉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으로 한다.

부 칙 〈제23013호, 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014호, 2011.7.4.〉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기능9급·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 칙 〈제23381호, 2011.12.2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경위"로 한다.

부 칙 〈제23382호, 2011.12.2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소방위"로 한다.

부 칙 〈제24083호, 201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462호, 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984호, 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228호, 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의2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 제26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44>부터 <418>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 장 총 칙	97
제 2 장 농림축산식품부	97
제 3 장 농림축산검역본부	105
제 4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7
제 5 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09
제 6 장 한국농수산대학	110
제 7 장 국립종자원	110
제 8 장 공무원의 정원	111
제 9 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112
부 칙	114
[별표 1]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4항 관련)	145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146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147

[별표 3의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26118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148

[별표 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5항 관련) 149

[별표 5] 농협경제지원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5항 관련) 150

[별표 6]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공무원 정원표(제43조제5항 관련) 151

[별표 7] AI예방통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5항 관련) 15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5호
일부개정 2013.12.12, 대통령령 제24954호
일부개정 2013. 9.12, 대통령령 제24705호
타법개정 2014. 1.31, 대통령령 제25133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일부개정 2014. 3.11, 대통령령 제25230호
일부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7호
일부개정 2015. 2.26, 대통령령 제261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중자원을 둔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제4조(하부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업정책국·국제협력국·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5.1.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4. 예산 및 기금의 결산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지원
- 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11. 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12. 농업통계·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3. 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1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1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4.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민원관련 제도 개선 등 민원업무 총괄
10.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1.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추진
7. 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인 단체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휴양산업 등 도·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 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농업 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7.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8.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19.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0.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 등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제12조(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식량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식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5.1.6.>

1.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제도의 개발
3.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남·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조정
6.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7.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9.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10.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11.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13. 농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재정 지원 총괄
1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5. 쌀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5.1.6.>
17.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의 운영
18. 농업 분야 재해대책 업무의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의 수립·추진
19. 농업 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20. 농작물·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운영
2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2. 양곡의 매입·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2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25. 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
 2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27.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28.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2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조정
 31. 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한해(旱害) 및 수해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33.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관리
 35. 개간·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④ 식량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제13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2.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3.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5.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에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6.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7.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8.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
9.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1.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3.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축산정책국) ① 축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

3. 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5. 초지조성·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수급 조절

6.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이용에 관한 사항

7. 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산업의 육성

9. 동물약품의 제조·수입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수산동물 약품은 제외한다)

10.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11.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

12.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제15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창조농식품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실장·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5.1.6.>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2.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11.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13. 설탕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영
15.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16.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17.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18.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19.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조정
2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23.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24.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25.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물 우수관리·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26. 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27.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8.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29.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0.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31. 원예·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32. 농식품분야 창조경제 기획 및 정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3.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4. 삭제 <2015.1.6.>
35. 농식품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36.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7. 삭제 <2015.1.6.>
38.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0.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1.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2.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3.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④ 식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유통소비정책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⑥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제3항제32호, 제33호, 제35호, 제36호 및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2.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3.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4.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5.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6. 수출입식물의 검역
7. 국내식물의 검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제18조(본부장)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8.>

1. 동물질병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5.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경제성 분석
6. 동물질병의 예찰·검색 및 조사
7. 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8. 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에 대한 인·허가 및 안전 관리
11.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12. 동물 보호·복지 분야의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1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4.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

제21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관리
4.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5. 수출입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잡초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검사
6. 식물검역기술의 개발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7.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 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의 보급
3. 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개발
4. 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5. 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 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연구 및 안전 관리
7.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연구
8. 삭제 <2015.1.6.>
9. 삭제 <2015.1.6.>

제23조(지역본부) ① 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②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및 영남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소)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우수농산물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2.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3. 농산물의 검사, 표준규격 및 양곡표시에 관한 사항
4.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6. 농업경영체 등록 등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 관리

제26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분석·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원장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소장은 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원) ① 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무소)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31조(직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2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

제34조(직무) 한국농수산대학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2.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원
3. 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종자원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종자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종자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 2014.11.19.>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1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조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농협경제지원팀)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5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협경제지원팀을 둔다.

② 농협경제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축산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농협경제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6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를 둔다.

-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FTA) 과장 1명을 둔다.
 - ③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동식물 위생·검역, 농업분야 원산지 및 무역 구제 등 그 밖의 협상분야에 관한 사항
 4.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FTA)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⑥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9.3.]

제44조(AI예방통제센터)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AI예방통제센터를 둔다.

- ② AI예방통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③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④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시료채취 검사 및 국내외 예찰 정보 수집·분석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3.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교육·홍보 및 제도운영
 4.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 수집·분석 및 역학조사·역학기법 개발
 6.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교육·훈련
 7.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법 위반사범 조사·단속 등 수사 업무
 8.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및 국내외 협력
 - ⑤ AI예방통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⑥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2.26.]

부 칙 〈제2445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수산·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9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6항·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검역·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⑥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1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제5항·제6항,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3항, 제40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의5제1항 본문, 제40조의7제3항, 제40조의8제1항, 제40조의10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5조제1호,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1호가목·나목, 제8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제6호,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의3제4호, 제40조의4제1항제2호, 제4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의6제1항·제2항·제5항, 제40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의8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별표 1 제3호마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권한은"을 각각 "권한을"로, "위임하고,"를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호, 제28조 및 제33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제5호,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검역·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다음의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2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예감사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물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보건복지부"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별표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4조제6항, 제46조제4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79조의 제목,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6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35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5조제6호마목, 제86조제1항제3호, 제86조의 2제4항, 제87조제3항제1호, 제94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9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7조제3항·제4항, 제68조제2항·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나목·바목, 제5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호,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4호·제5호,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제4항, 제72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별표 2 제2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57호 및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별표 2 제2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및 제36호 중 "「농업·농촌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1>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동물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5호가목 단서,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7조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3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33>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5항, 제5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6>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7>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전라북도지사

<3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제6조제4호,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식품연수원"을 각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중 수산질병의 자격인증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제2항, 제18조제2

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6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4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 제13조제4호, 제14조제2호, 제23조의2,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40조제2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2 제5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8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의 대상 어선란, 별표 4 제2호가목1)나),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같은 목 6)가)·나)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7)·10)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47조제2항 및 별표 6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5항,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호, 제6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4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IV.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한다.

<47>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항·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및 별표 제1호나목1)·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4항 및 별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

11조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5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4호,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4조의8 후단, 제43조제1항 및 제5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6호, 제21조의3제2항 및 제4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4>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5>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 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 영업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7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제3항·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제6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 본문,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 후단,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5항제4호, 제66조의3제5호, 제71조의4제2항, 제74조제9항·제11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6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

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을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을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업"으로 한다.

<6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제5항, 제16조의2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8> 축산업계열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9>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

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6제3항제1호나목,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19조의10제5항, 제19조의11제1항·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제4항, 제19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제22조제4호,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농산물·축산물의 품목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24705호, 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제외한 새만금사업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 칙 〈제24954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명(3급 또는 4급 이하 2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5133호,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제25230호, 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제25977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3급 또는 4급 이하 2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6118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별표 1]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 (제23조제4항 관련)

명칭	위치
인천공항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호남지역본부	전라북도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2] <개정 2015.2.2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 (제38조제1항 관련)

총계	541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3
일반직 계	535
고위공무원단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이하	517
전문경력관	3

[별표 3] <개정 2015.1.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제39조제1항 관련)

총계	2,392
일반직 계	2,392
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3
3급 또는 4급 이하	2,367
전문경력관	16
임기제(교수요원)	1

[별표 3의2] <신설 2015.2.26.> [적용일자:2017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26118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2,388
일반직 계	2,388
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3
3급 또는 4급 이하	2,363
전문경력관	16
임기제(교수요원)	1

[별표 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공무원 정원표 (제41조제5항 관련)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이하	3

[별표 5]

농협경제지원팀 공무원 정원표 (제42조제5항 관련)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또는 5급 이하	5

[별표 6] <신설 2013.9.3.>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공무원 정원표 (제43조제5항 관련)

총 계	2
일반직 계	2
4급 이하	2

[별표 7] <신설 2015.2.26.>

AI에방통제센터 공무원 정원표 (제44조제5항 관련)

총계	13
일반직 계	13
4급 이하	1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155
제 2 장 농림축산식품부	155
제 3 장 농림축산검역본부	176
제 4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88
제 5 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93
제 6 장 한국농수산대학	194
제 7 장 국립종자원	194
제 8 장 공무원의 정원	194
제 9 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196
부 칙	196
[별표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제18조 관련)	218
[별표 2]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	219

[별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3조 관련)	222
[별표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제3항 관련)	223
[별표 5] 국립종자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제3항 관련)	227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228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230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232
[별표 8의2]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234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236
[별표 9의2]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238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240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242
[별표 1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244
[별표 13]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245
[별표 14]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246
[별표 15]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31조 관련) ...	247
[별표 1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249
[별표 17] 농협경제지원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관련)	250
[별표 18]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251
[별표 19] AI예방통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2항 관련)	25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2013. 3.23	제 1호
타법개정	2013. 6.12	제 35호
일부개정	2013. 7.10	제 39호
일부개정	2013. 9.12	제 41호
일부개정	2013.12.12	제 61호
일부개정	2014. 3.11	제 82호
일부개정	2014. 6.25	제 92호
일부개정	2014.10.16	제 113호
일부개정	2015. 1. 6	제 130호
타법개정	2015. 2. 2	제 133호
일부개정	2015. 2.26	제 1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왜곡보도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 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 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책고객서비스(PCRM) 등 온라인홍보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부(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조정
3. 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 각종 정책 의제관리
5.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7.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9. 농림축산식품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0.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운영
 12. 농림축산식품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3. 그 밖에 정책기획관 소관사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2015.1.6.>
-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1.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부내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 2의2. 부 내 정부3.0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리
 9. 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11.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13.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에 관한 사항
-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
- ⑦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농업·농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림축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 통계업무의 기획·조정
11. 국내외 농림축산 통계의 수집·가공·분석 및 자료관리
12. 국제농업정보·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3. 농업정보·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⑧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사정업무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경영인력과·지역개발과·농촌복지여성과 및 농촌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③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 농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영
9. 농촌 활력창출운동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13. 농림·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영인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5. 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7.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사항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의 운영
 9. 농업인 단체에 관한 사항
 10.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촌 뉴타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4.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5.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7.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농촌 공동 생활형 홈 모델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3. 농촌 지역 권역별, 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16. 삭제 <2013.9.12.>
 17. 삭제 <2013.9.12.>
 18. 삭제 <2013.9.12.>
 19. 삭제 <2013.9.12.>
 20. 삭제 <2013.9.12.>
 21. 삭제 <2013.9.12.>
 22. 삭제 <2013.9.12.>
 23. 삭제 <2013.9.12.>
 24. 삭제 <2013.9.12.>
 25. 삭제 <2013.9.12.>
 26. 삭제 <2013.9.12.>
 27. 삭제 <2013.9.12.>
 28. 삭제 <2013.9.12.>
 29. 삭제 <2013.9.12.>
 30. 삭제 <2013.9.12.>
 31. 삭제 <2013.9.12.>
 32. 삭제 <2013.9.12.>
 33. 삭제 <2013.9.12.>
 34. 삭제 <2013.9.12.>
- ⑥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력의 개발 및 활용
6. 여성농업인 단체와 업무 협조
7.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8.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과 보육여건, 제도개선
11. 농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3.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

⑦ 농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1. 농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특화·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18.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농촌 산업 관련 교육·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제9조(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장과 식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업정책국에 농업정책과·농지과·농업금융정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재해보험정책과·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기자재정책팀·농업기반과 및 간척지 농업과를 두되,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중장기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4. 통일농업정책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5.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8.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9.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12.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3.9.12.>
14. 삭제 <2013.9.12.>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영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9.12.>

⑤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보험)에 관한 사항
14.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

1.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1.6.>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영
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6.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9.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10. 발농업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⑦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업정책보험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가축 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영

⑧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9.12.>
6.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 식량 관련 국제협력·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9. 「양곡관리법」의 운영
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 삭제 <2013.9.12.>
12.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3.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 및 판매
16.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단속
17.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맥류·두류·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7.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곡(쌀을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13.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 ⑩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2.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5. 「비료관리법」의 운영
 6. 비료의 공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
 7. 토양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8. 「농약관리법」의 운영
 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⑪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1.6.>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추진
 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4. 지하수자원 관리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5.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6. 삭제 <2013.9.12.>
 7. 삭제 <2013.9.12.>
 8.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사업 준공된 간척토지를 제외한다)의 관리·처분
 9.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12. 삭제 <2013.9.12.>
 13.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14.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받기반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6. 대규모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7.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8.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20.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수력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⑫ 간척지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1.6.>

1. 삭제 <2013.9.12.>
2. 삭제 <2013.9.12.>
3.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9.12.>
5.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토지의 이용·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간척지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첨단농업·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개간·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13.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14.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⑬ 식량정책관은 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기자재정책팀·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제10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농업통상과 및 검역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삭제 <2015.1.6.>
3.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6.>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9.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 9의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 9의3.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5.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8.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9.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5.1.6.>

⑤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11.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12.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1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14.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15.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16.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17.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8.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9.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2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⑥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방역법」의 운영
3.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11.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12.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 운용

제11조(축산정책국) ① 축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축산정책국에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 및 친환경축산팀을 두되, 축산경영과장 및 방역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친환경축산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지원
5.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및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종별 산업발전대책의 수립·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10.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1. 「사료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낙농진흥법」의 운영

⑤ 방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대·중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 수립·추진
2.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구제역 등 동물백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6.>
6. 삭제 <2015.1.6.>
7.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용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관리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⑥ 방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소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2. 동물 보호·복지 및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3.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축산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6.>
6.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
7. 가축 매몰지의 지표수 관리 업무
8. 삭제 <2015.1.6.>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⑦ 친환경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추진
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다) 대책의 수립·추진
4.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료작물의 생산·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초지법」의 운영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산업정책실장·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등급으로, 각 정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② 식품산업정책실에 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수출진흥과·유통정책과·식생활소비정책과·원예산업과·원예경영과·창조농식품정책

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 및 종자생명산업과를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1.6.>

③ 식품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9. 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10. 「식품산업진흥법」의 운영
11.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2.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3.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품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업체 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 진흥법」의 운영
10. 식품명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설탕산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⑤ 외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3.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진흥법」의 운용

⑥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중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생산·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12.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4.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영
18.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 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5.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7.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8. 제4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5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7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영
10.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전파에 관한 사항
11.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15.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8.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⑨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특용작물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7. 채소류·특용작물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삼산업법」의 운영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 ⑩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 ⑪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식품분야 창조경제 기획 및 정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6.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9.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림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림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림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청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11.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외 대응

⑬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⑭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5.1.6.>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5.1.6.>
6. 도시농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종자 및 농식품 생명산업 관련 대외협력
8.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9.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
10.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 ⑮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 및 수출진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유통정책관은 유통정책과·식생활소비정책과·원예산업과 및 원예경영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창조농식품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 및 종자생명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 및 가축질병상황실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 및 가축질병상황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육·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4.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감사·복무관리 및 청렴대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검역본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변화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 도서·정보자료의 구입·수입·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가축질병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1.6., 2015.2.26.>

1. 위기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동식물 방역 및 안전 관련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등 위기관리·대응
3.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응상황실 운영
4. 위기대응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홍보
5.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휘소연습(CPX) 주관
6. 동식물질병에 대한 방역업무 및 위기대응 정보화 계획 수립·시행
7. 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관리 및 연구업무 정보화 계획 수립·시행
8. 행정업무 정보화계획 수립·시행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축산물위생 역학조사와 조치를 위한 출입·검사
10.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전산 관리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질병관리부에 질병관리과·동물검역과·역학조사과·질병진단과·위험평가과·동물보호과·동물약품관리과 및 동물약품평가과를 두되, 질병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③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동물방역기술에 관한 지도·훈련 및 홍보
4.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및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운영
6. 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7. 우수종돈장 지정 및 종돈·종계장의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방역센터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해외작업장의 관리
5.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7. 관리수의사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9.12.>
10.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발생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2.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연구
3. 동물질병의 예찰정보 수집·분석 및 예찰시스템 개발·연구
4. 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실적, 혈청검사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위한 출입·검사
6. 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⑥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의 병성감정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국가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동물질병의 예찰·검색 및 조사사업
3. 동물질병의 병리기전(病理機轉) 및 병리학적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
4. 동물질병의 혈청검사 등 진단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정도(精度)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6. 삭제 <2013.9.12.>
- ⑦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검역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간 교환
 3.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7.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⑧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개발·연구
 2. 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시험·연구
- ⑨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안전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업·수리업에 대한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제도 운용
 7.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 관리센터 운영 등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⑩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국가검정 및 검정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2. 수거되거나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시험·연구
4.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6.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연구
7.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연구
8. 수의(獸醫) 독성학에 관한 시험·연구

제15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수출지원과·위험관리과·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 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식물검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훈련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0. 식물검역 관련 장비의 수급 및 관리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
12.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총괄과 법령·제도 운영
3.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4. 해외 식물검역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
5. 외국의 식물검역제도 조사

6. 현지 검역관의 초청 및 파견에 관한 사항

7.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용요건의 설정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검사 및 관리의 총괄

2. 식물 병·해충 및 잡초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련기준 설정

3. 규제 병·해충 및 잡초의 지정

4.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업무

5.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업무의 지원

6.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

7. 병해충 정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8.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分類同定)

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외래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의 계획수립 및 총괄

2. 국내식물의 검역 관리

3. 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평가 및 설정

4.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열처리업체의 지도, 감독 및 관리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수입금지품의 허가 및 관리

7.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격리재배식물 검역관련 제도의 운영

⑦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식물검역관련 조사·연구 업무

2.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평가

3. 해외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식물 병해충·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첨단검색기법의 개발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

6. 수입식물의 격리재배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연구기획과·세균질병과·구제역진단과·바이러스질병과·조류질병과 및 해외전염병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기획·조정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의과학 시험연구사업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3. 동물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수입승인 및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4.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체제의 개발·개량
3.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연구
4. 브루셀라병 국제표준기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5. 동물의 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체제의 개발·개량
6. 위생곤충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및 병성감정
7. 원유(原乳) 검사 공영화에 관한 사항

⑤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구제역 진단·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구제역에 관한 생물학적 체제의 개량·개발
4. 구제역 검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구제역 예찰 및 예찰기술 개발

⑥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관한 시험·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진단·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돼지열병 국제표준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동물 바이러스 생물학적 체제 개량·개발
5. 돼지열병 청정화 검색·기술 개발 및 진단액 생산보급
6.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연구
7. 수의생명공학 분야 및 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8. 수의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9. 동물위생 및 동물질병의 진단을 위한 특이세포 동물모델 및 바이오신약 개발

연구

10.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시험·연구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질병에 관한 시험·연구
2. 조류질병의 진단·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개발
3. 조류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개량 연구
4.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시험·연구
5. 뉴캐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⑧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시험·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연구
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량·개발
4.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5.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매개곤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⑨ 삭제 <2015.1.6.>

제17조(지역본부) 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영남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역본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화물검역과·휴대품검역과·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시험분석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며,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1과·식물검역2과·시험분석과·가축질병방역센터(2개소)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전염병검사와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며,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시험분석과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 및 식물검역과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및 휴대품검역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특수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며,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

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1과장 및 식물검역2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전염병검사과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리
2. 복무·교육훈련 및 일반사무
3.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4.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편성·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1.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화물검역·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 동물·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특송화물·우편물품 검역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
5. 가축전염병방역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7.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 수출입 동·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0. 동물·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1.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⑤ 휴대품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조사·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검역
5.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소독·교육
7. 축산관계자 입·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축산관계자 신고·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운영
9.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10. 인천국제공항 가축전염병 방역

11. 그 밖에 휴대품 검역 전반적인 사항

⑥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 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 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 동물계류장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 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소·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업무
6. 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관리
7.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관리

⑦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分類同定)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2. 식물검역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업무
4. 식물의 검사·검역 정밀분석
5.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
7.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식물에 한한다)
8. 그 밖에 식물 관련 분석·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관리

⑧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 검역 및 제도 운영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10.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11. 가축전염병 방역(제주지역본부에 한한다)

⑨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수출식물의 검역 및 교육
9.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10.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에 관한 업무
11.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⑩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식물검역 관련 명예감시원 관리
9. 남북한 반출입 식물 검역

⑪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교육
2.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

4. 수출입식물의 소독·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5. 국내식물의 검역
6.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7. 수출식물검역단지 지정·운영

⑫ 서울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식물 검역 및 국내식물의 검사
3.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4.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5.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6. 격리재배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7.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방제·역학조사

8.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 관리

9. 그 밖에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⑬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 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⑭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지원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농업경영정보과·품질검사과·소비안전과·원산지관리과 및 인증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농업경영정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품질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소비안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과장 및 인증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5.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7. 그 밖에 원내 다른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품질관리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변화관리업무 총괄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자료관리
6.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⑤ 농업경영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맞춤형농정 추진 및 제도개선 업무 지원
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3.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 지원
4.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홍보
5. 각종 직불제 운용 및 제도 개선 등
6.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용 면세유 사후 관리

8.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농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규격화 지원
2.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관리
3. 농산물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기술 교육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사품 사후관리
7.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우수식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우수식품인증(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제외한다)의 사후관리
10. 지역농업활성화 관련 업무지원
11. 삭제 <2013.9.12.>
12. 삭제 <2013.9.12.>
13. 김치산업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⑦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9.12.>
4. 삭제 <2013.9.12.>
5. 삭제 <2013.9.12.>
6. 삭제 <2013.9.12.>
7.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9.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10. 안전성 분석방법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사료의 검정 및 안전성 관리

⑧ 원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농림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삼류 사후관리
5.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6.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
7.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 ⑨ 인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1.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2. 친환경농축산물·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3. 유기농식품의 국가간 동등성 인정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사후관리
 5.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6.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21조(시험연구소)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원 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안전성분석과·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곡물의 도정을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시험
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시험
7. 쌀의 단백질·신선도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8. 농산물의 검사규격·표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용수·자재의 유해물질 조사·분석
2.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4. 안전성조사요원 및 분석요원의 교육

⑤ 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 사료의 성분과 잔류물질의 분석·검정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시험연구
4. 우수식품의 조사·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 ⑥ 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
2. 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시험·연구
3.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의 검정·수입 승인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연구
5.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6. 원산지·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7. 쌀·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평가

제22조(지원) ① 지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리원 지원에 운영지원과·품질관리과·유통관리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제주지원에는 유통관리과 및 품질관리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품질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유통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간행물 발간과 공보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그 밖에 지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표준규격의 보급 및 규격화사업
2. 농산물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3. 농산물의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4.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5.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사후관리
6.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8.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직불제에 관한 사항
9. 우수식품 사후관리
10. 술에 대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11. 농업용 면세유 사후 관리
1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 농림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농산물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공매양곡 사후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

⑦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약 등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3.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4. 생산단계 농산물 유해물질 현황조사
5.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6.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농가 교육 및 지도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원의 경우 유통관리과장이 제4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품질관리과장이 제5항과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23조(관리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관리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관리원 지원 사무소) ① 관리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관리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25조(농식품공무원교육원)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교육기획과 및 전문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문서·법령·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
6. 원내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평가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3. 교육운영심의회 운영
4. 공무원의 변화·혁신역량 제고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6.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7. 교육자료의 개발·관리 및 도서관리
8.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9. 교육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의 관리
10.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11.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스템 운영

⑤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의 설계·운영
2. 농업관련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4.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5. 전문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의 편찬·발간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

제26조(총장)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총장 1명을 두고, 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국립종자원

제27조(원장)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0., 2013.9.12., 2015.1.6.>

③ 종자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 중 2명(8급 1명, 9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12.12.>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③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④ 한국농수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⑤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제31조(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2명(6급 6명, 7급 6명)으로 대체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원 6명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6.]

[중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2.26.>]

제3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제31조에서 이동, 중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2.26.>]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

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및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역관리과장, 원예산업과장, 종자생명산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2.26.>]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2.26.>

제34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2.26.>]

제35조(농협경제지원팀) ① 농협경제지원팀의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농협경제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2.26.>]

제36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와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본조신설 2013.9.12.]

[제35조에서 이동 <2015.2.26.>]

제37조(AI예방통제센터) ① AI예방통제센터의 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AI예방통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15.2.26.]

부 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수산·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4급 3명, 4급 13명, 4·5급 20명, 5급 111명, 6급 211명, 7급 156명, 8급 124명, 9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기능6급 41명, 기능7급 32명, 기능8급 38명, 기능9급 216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53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6명, 4·5급 1명, 5급 16명, 6급 87명, 7급 78명, 8급 23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29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4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7급 4명의 정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3.9.12>

제7조(총액인건비제로 증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재해보험팀 및 수출진흥팀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6.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재해보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농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출진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품산업진흥과장이 분장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 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

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제7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

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⑪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2 II. 개별기준의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II. 개별기준의 제18호차목,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⑫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8조의9제1항, 제18조의11제2항, 별표 1 제1호거목, 같은 표 제2호고목, 별표 8, 별표 9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8호, 제4조,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제4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6항 후단, 제4조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시험 항목란, 같은 호 기준란,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19>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별표 3 비고 1), 같은 표 비고 2)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1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 별표 6 제2호가목7),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7호, 별표 8 제1호라목1)사), 같은 목 2)라),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II. 개별 기준 제9호사목,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3>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호, 제12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호, 제22조제7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호, 별표 1 제36호, 별표 2 제4호, 별표 3 1.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제3호, 별표 4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4호다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5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6 제3호, 별표 7 제3호, 별표 8 제1호 본문, 같은 표 제3호·제4호, 별표 9 제5호, 별표 10 제4호, 별표 11 제3호, 별표 12 제4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별표 4 제4호가목, 별표 9 제4호 및 별표 10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9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제5조,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3제6항,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7제1항제4호, 제38조,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제3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제4항·제5항, 별표 1 제1호·제6호·제13호,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별표 3 비고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표 제6호 단서, 별표 5 제9호,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7조의3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검역본부"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별표 4 제1호바목, 별표 5 제7호·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한다.

<2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단서, 제6조제1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별표 2 제2호바목1)가)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9호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

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2호,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4>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5>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 제19조의11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8>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 칙 〈제35호,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제1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제39호, 201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호, 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은 2016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9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6년 9월 12일 이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1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의 정원 중 1명은 2016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9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6년 9월 12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으로 본다.

부 칙 〈제61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9명(5급 2명, 6급 10명, 7급 6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1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2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호, 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호,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0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기자재정책팀 및 친환경축산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기자재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량산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친환경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방역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2명, 6급 6명, 7급 8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3호, 2015.2.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쌀소득직접지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35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8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각각 별표 8의2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항 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운서동·용유동
영남 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
중부 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운서동·용유동은 제외한다)·경기도(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한다)·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서울 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 강원도
호남 지역본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제주 지역본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1. 동물 및 축산물 분야

명칭		위치	관할구역
영남지역본부	김해공항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및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국제우체국
	부산신항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명지동 및 천가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웅천동 및 거제시
	신선대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해운대구 및 기장군
	대구 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창원 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밀양시·거제시·양산시·김해시·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 및 웅천동은 제외한다)
중부지역본부	평택 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및 당진시
	용인 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안성시·용인시·이천시 · 여주군·과천시 및 수원시
	청주 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천안 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당진시 및 서산시 대산읍은 제외한다)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경기도 고양시 및 김포시
	속초 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고성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평창군·횡성군·영월군 및 정선군
호남지역본부	광양 사무소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보성군 및 구례군
	광주 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곡성군·담양군·영광군·장성군·화순군·목포시·신안군·영암군·진도군·함평군·강진군·완도군·장흥군·해남군 및 무안군
	전주 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남원시·전주시·무주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 및 진안군

제주 지역본부	제주공항 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 각 지역본부 사무소 관할구역으로서 위 표에서 정하여진 구역외의 구역은 각 지역본부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식물 분야			
	명칭	위치	관할구역
영남 지역본부	김해공항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강동동·대저1동 및 대저2동, 경상남도 김해시(생림면 도요리는 제외한다)
	부산신항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명지동 및 천가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 및 웅천동
	신선대 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및 용당동, 수영구·해운대구 및 기장군
	대구 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포항시·고령군·군위군·성주군·영덕군·영양군·울릉군·울진군·청도군 및 청송군
	양산 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밀양시 및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및 삼동면
	창원 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창원시(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 및 웅천동은 제외한다)·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 및 합천군
	김해 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생림면 도요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구미 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봉화군·예천군·의성군 및 칠곡군
	울산 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및 삼동면은 제외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중부지역본부	평택 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및 당진시
	청주 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천안 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당진시 및 서산시 대산읍은 제외한다)
	의왕 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시흥시·수원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용인시·이천시·의왕시 및 여주군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경기도 고양시 및 김포시
	속초 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고성군·양구군·양양군 및 인제군
	동해 사무소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삼척시·태백시·평창군·횡성군·영월군 및 정선군
호남지역본부	광양 사무소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순천시·여주시·고흥군·구례군 및 보성군
	광주 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강진군·곡성군·담양군·영광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해남군 및 화순군
	전주 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남원시·전주시·무주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 및 진안군
	무안공항 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 및 함평군
제주지역본부	제주공항 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
<p>※ 각 지역본부 사무소 관할구역으로서 위 표에서 정하여진 구역외의 지역은 각 지역본부 관할구역으로 한다.</p>			

[별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기지원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강원지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충북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남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전북지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남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경북지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경남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4] <개정 2014.3.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4조제3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기 지원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수원사무소	수원시	경기도 중 수원시·안산시
	화성·오산사무소	화성시	경기도 중 화성시·오산시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	의정부시	경기도 중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
	평택사무소	평택시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사무소	안성시	경기도 중 안성시
	구리·남양주사무소	구리시	경기도 중 구리시·남양주시
	가평사무소	가평군	경기도 중 가평군
	성남·하남·광주사무소	광주시	경기도 중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이천·용인사무소	이천시	경기도 중 이천시·용인시
	파주·고양사무소	파주시	경기도 중 파주시·고양시
	포천·연천사무소	포천시	경기도 중 포천시·연천군
	여주사무소	여주군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사무소	양평군	경기도 중 양평군
	강화사무소	강화군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김포사무소	김포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
강원 지원	원주사무소	원주시	강원도 중 원주시
	횡성사무소	횡성군	강원도 중 횡성군
	강릉사무소	강릉시	강원도 중 강릉시
	삼척·동해사무소	삼척시	강원도 중 삼척시·동해시
	속초·양양사무소	속초시	강원도 중 속초시·양양군
	고성사무소	고성군	강원도 중 고성군
	홍천사무소	홍천군	강원도 중 홍천군
	영월사무소	영월군	강원도 중 영월군
	평창사무소	평창군	강원도 중 평창군
	정선·태백사무소	정선군	강원도 중 정선군·태백시
	철원사무소	철원군	강원도 중 철원군
	인제·양구사무소	인제군	강원도 중 인제군·양구군

충북 지원	충주사무소	충주시	충청북도 중 충주시
	제천·단양사무소	제천시	충청북도 중 제천시·단양군
	옥천사무소	옥천군	충청북도 중 옥천군
	영동사무소	영동군	충청북도 중 영동군
	괴산·증평사무소	괴산군	충청북도 중 괴산군·증평군
	보은사무소	보은군	충청북도 중 보은군
	음성사무소	음성군	충청북도 중 음성군
	진천사무소	진천군	충청북도 중 진천군
충남 지원	천안사무소	천안시	충청남도 중 천안시
	아산사무소	아산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
	공주·세종사무소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중 공주시
	서산·태안사무소	서산시	충청남도 중 서산시·태안군
	논산사무소	논산시	충청남도 중 논산시·계룡시
	금산사무소	금산군	충청남도 중 금산군
	부여사무소	부여군	충청남도 중 부여군
	보령사무소	보령시	충청남도 중 보령시
	서천사무소	서천군	충청남도 중 서천군
	홍성·청양사무소	홍성군	충청남도 중 홍성군·청양군
	예산사무소	예산군	충청남도 중 예산군
	당진사무소	당진시	충청남도 중 당진시
전북 지원	익산사무소	익산시	전라북도 중 익산시
	군산사무소	군산시	전라북도 중 군산시
	남원사무소	남원시	전라북도 중 남원시
	순창사무소	순창군	전라북도 중 순창군
	임실사무소	임실군	전라북도 중 임실군
	정읍사무소	정읍시	전라북도 중 정읍시
	김제사무소	김제시	전라북도 중 김제시
	부안사무소	부안군	전라북도 중 부안군
	진안·장수사무소	진안군	전라북도 중 진안군·장수군
	무주사무소	무주군	전라북도 중 무주군
	고창사무소	고창군	전라북도 중 고창군

전남 지원	목포·신안사무소	목포시	전라남도 중 목포시·신안군
	무안사무소	무안군	전라남도 중 무안군
	여수사무소	여수시	전라남도 중 여수시
	순천·광양사무소	순천시	전라남도 중 순천시·광양시
	나주사무소	나주시	전라남도 중 나주시
	화순사무소	화순군	전라남도 중 화순군
	담양·장성사무소	담양군	전라남도 중 담양군·장성군
	곡성·구례사무소	곡성군	전라남도 중 곡성군·구례군
	고흥사무소	고흥군	전라남도 중 고흥군
	보성사무소	보성군	전라남도 중 보성군
	장흥사무소	장흥군	전라남도 중 장흥군
	강진·완도사무소	강진군	전라남도 중 강진군·완도군
	해남·진도사무소	해남군	전라남도 중 해남군·진도군
	영암사무소	영암군	전라남도 중 영암군
	영광사무소	영광군	전라남도 중 영광군
	함평사무소	함평군	전라남도 중 함평군
경북 지원	포항·울릉사무소	포항시	경상북도 중 포항시·울릉군
	경주사무소	경주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
	김천사무소	김천시	경상북도 중 김천시
	안동사무소	안동시	경상북도 중 안동시
	영천사무소	영천시	경상북도 중 영천시
	경산·청도사무소	경산시	경상북도 중 경산시·청도군
	구미·칠곡사무소	구미시	경상북도 중 구미시·칠곡군
	상주사무소	상주시	경상북도 중 상주시
	의성·군위사무소	의성군	경상북도 중 의성군·군위군
	영덕사무소	영덕군	경상북도 중 영덕군
	청송·영양사무소	청송군	경상북도 중 청송군·영양군
	성주사무소	성주군	경상북도 중 성주군
	고령사무소	고령군	경상북도 중 고령군
	문경사무소	문경시	경상북도 중 문경시
	예천사무소	예천군	경상북도 중 예천군
	영주·봉화사무소	영주시	경상북도 중 영주시·봉화군
	울진사무소	울진군	경상북도 중 울진군

경남 지원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주사무소	진주시	경상남도 중 진주시
	사천사무소	사천시	경상남도 중 사천시
	통영·거제사무소	통영시	경상남도 중 통영시·거제시
	고성사무소	고성군	경상남도 중 고성군
	밀양사무소	밀양시	경상남도 중 밀양시
	김해·양산사무소	김해시	경상남도 중 김해시·양산시
	함안·의령사무소	함안군	경상남도 중 함안군·의령군
	창녕사무소	창녕군	경상남도 중 창녕군
	하동사무소	하동군	경상남도 중 하동군
	남해사무소	남해군	경상남도 중 남해군
	함양·산청사무소	함양군	경상남도 중 함양군·산청군
	합천사무소	합천군	경상남도 중 합천군
	거창사무소	거창군	경상남도 중 거창군
제주 지원	서귀포사무소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중 서귀포시

[별표 5] <개정 2015.1.6.>

국립중자원 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8조제3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충남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북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강원지원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전북지원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전남지원	전라남도 함평군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북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남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지원	강원도 평창군	
서부지원	전라북도 익산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 (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541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상당)	2
일반직 계	535
고위공무원단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농업연구관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8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5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사무관	55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 농업 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83
공업사무관	1
농업사무관	24
수의사무관	3
시설사무관	8
행정주사	52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수의연구사	56
농업주사	25
수의주사	5
시설주사	7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8
농업주사보	7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3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5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20
전문경력관 가군(인사기록담당관)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기획요원)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1

[별표 7] <개정 2015.2.2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545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상당)	2
일반직 계	539
고위공무원단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농업연구관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8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5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사무관	55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84
공업사무관	1
농업사무관	24
수의사무관	3
시설사무관	8
행정주사	52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수의연구사	56
농업주사	25
수의주사	5
시설주사	7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8
농업주사보	7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3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5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주사보	2
사무운영서기보	18
전문경력관 가군(인사기록담당관)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기획요원)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1

[별표 8] <개정 2015.1.6.>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929
일반직 계	9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6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6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4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5
농업사무관	3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7
전산사무관	1
수의사무관	7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1
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21
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
행정주사	5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5
농업주사	87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28
행정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통계주사 또는 수의연구사	25
수의주사	97

수의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전산주사	6
행정주사보	21
행정주사보·수의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5
공업주사보	2
농업주사보	114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2
수의주사보	100
수의주사보·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
전산주사보	6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7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0
공업서기	1
농업서기	69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
공업서기보	2
운전서기보	14
방호서기보	9
수의연구관	20
수의연구사	73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6
전문경력관 나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전문경력관 다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별표 8의2] <신설 2015.2.26.> [적용일자:2017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925
일반직 계	92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6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6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4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5
농업사무관	3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7
전산사무관	1
수의사무관	7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1
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21
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
행정주사	5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5
농업주사	87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28
행정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통계주사 또는 수의연구사	25

수의주사	95
수의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전산주사	6
행정주사보	21
행정주사보·수의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5
공업주사보	2
농업주사보	114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2
수의주사보	99
수의주사보·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
전산주사보	6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7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0
공업서기	1
농업서기	69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
공업서기보	2
운전서기보	14
방호서기보	9
수의연구관	20
수의연구사	72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6
전문경력관 나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전문경력관 다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929
일반직 계	9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6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6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	4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5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8
농업사무관	12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0
전산사무관	1
수의사무관	16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1
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21
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
행정주사	5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5
농업주사	85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28
행정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통계주사 또는 수의연구사	25
수의주사	93
수의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전산주사	8
행정주사보	18
행정주사보 · 수의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5
공업주사보	2
농업주사보	107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2
수의주사보	93
수의주사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
전산주사보	4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8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
공업서기	1
농업서기	64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
공업서기보	2
운전서기보	14
방호서기보	9
수의연구관	24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4
수의연구사	65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사무운영주사보	2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4
전문경력관 나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전문경력관 다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별표 9의2] <신설 2015.2.26.> [적용일자:2017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925
일반직 계	92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6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6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2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	4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5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8
농업사무관	12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0
전산사무관	1
수의사무관	16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1
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21
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3
행정주사	5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5
농업주사	85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28
행정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통계주사 또는 수의연구사	25
수의주사	91
수의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전산주사	8
행정주사보	18

행정주사보 · 수의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5
공업주사보	2
농업주사보	107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2
수의주사보	92
수의주사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
전산주사보	4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8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9
공업서기	1
농업서기	64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
공업서기보	2
운전서기보	14
방호서기보	9
수의연구관	24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4
수의연구사	64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
사무운영주사보	2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4
전문경력관 나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전문경력관 다군(검역탐지조사요원)	8

[별표 10] <개정 2015.2.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1,421
일반직 계	1,421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3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7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9
농업사무관	7
전산사무관	1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
행정주사	31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98
농업주사	192
전산주사	6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20
행정주사보	47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26
농업주사보	167
전산주사보	10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0
행정서기	57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52

공업서기	3
농업서기	209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9
공업서기보	1
농업서기보	35
운전서기보	16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8
농업연구관	2
농업연구사	9
열관리운영서기보	4
사무운영서기보	42

[별표 11] <개정 2015.2.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421
일반직 계	1,421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22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9
농업사무관	7
전산사무관	1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
행정주사	31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1
농업주사	192
전산주사	7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20
행정주사보	47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10
농업주사보	172

전산주사보	9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0
운전주사보	1
위생주사보	1
행정서기	57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52
공업서기	3
농업서기	234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9
공업서기보	1
농업서기보	5
운전서기보	14
방호서기보	8
농업연구관	2
농업연구사	9
사무운영주사보	3
사무운영서기	4
열관리운영서기보	4
사무운영서기보	35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총계	42
일반직 계	4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4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농업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식품위생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5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
공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
임기제 교수요원(나급)	1

[별표 13] <개정 2015.1.6.>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4항 관련)

총계	87
특정직 계	43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3
조교	10
일반직 계	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총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41
전문경력관 가군(생활체육교관)	1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1

[별표 14] <개정 2015.1.6.>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5항 관련)

총계	203
일반직 계	20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202

[별표 15] <개정 2015.1.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제31조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6
일반직 계	6
5급	1
6급	2
7급	1
8급	1
9급	1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23
일반직 계	23
6급	4
7급	12
8급	4
9급	1
연구사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22
-----	----

일반직 계	22
7급	9
8급	11
9급	1
연구사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1
일반직 계	1
6급	1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6급	1
국립종자원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3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6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8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연구사	1

[별표 1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총 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별표 17]

농협경제지원팀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제2항 관련)

총 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2

[별표 18] <신설 2013.9.12.>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공무원 정원표 (제35조제2항 관련)

총 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별표 19] <신설 2015.2.26.>

시예방통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2항 관련)

총계	13
일반직 계	13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	1
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3
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
수의주사 또는 농업주사	4
수의주사·농업주사 또는 수의연구사	2
수의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연구사	2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

- ▣ 한국농수산대학 기본운영규정 255

- ▣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281

한국농수산대학 기본운영규정

한국농수산대학 기본운영규정

제정	2008. 1. 1.	한국농업대학	훈령 1호
개정	2008. 4. 22.	한국농업대학	훈령 2호
개정	2008. 10. 8.	한국농업대학	훈령 3호
개정	2009. 10. 2.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호
개정	2010. 2. 26.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2호
개정	2010. 5. 6.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3호
개정	2010. 9. 20.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4호
개정	2011. 5. 18.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5호
개정	2012. 1. 30.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6호
일부개정	2012. 5. 30.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7호
일부개정	2012. 7. 20.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8호
일부개정	2013. 2. 1.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9호
일부개정	2013. 3. 23.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0호
일부개정	2013. 7. 8.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1호
일부개정	2013. 8. 16.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2호
일부개정	2013. 9. 12.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3호
일부개정	2013. 12. 12.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4호
일부개정	2014. 3. 11.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5호
일부개정	2015. 1. 6.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6호
일부개정	2015. 3. 1.	한국농수산대학	훈령 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대학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소관업무) 대학은 전문농어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예후계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
2. 학생의 전문농어업기술의 실천능력 배양
3.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 지원 <개정 2013. 2. 1>
4.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산학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학의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업무집행절차

제5조(승인 등) ①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총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장관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 그 밖에 총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총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제7조(운영성과 및 사업실적 보고) 총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총장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임 및 전결) ①총장은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의 범위·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운영

제10조(하부조직) ①대학에 운영지원과·교수부·교학과 및 기획조정팀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교수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농촌지도관으로, 기획조정팀장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9. 20.> <개정 2013. 3. 23>

②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문서·감사·보안 및 관인관수
2. 급여·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업무
4. 구내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업무
5. 그 밖에 대학 내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학과의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수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직공무원의 인사
4. 학사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6. 수업·시험·학점·성적관리
7. 학생현장실습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현장실습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9.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도
10. 공무국외여행 심사
11. 해당 부속시설 및 교육실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 9. 20.>
12.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신설 2010. 9. 20.>

④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개정 2010. 9. 20.>

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졸업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체육행사 및 기숙사생활관리
6. 학생병역에 관한 사무
7. 도서관 및 학보사의 관리
8. 양호실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무 및 학생지도에 관련되는 사항

⑤기획조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9. 20.>

1. 각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대학운영위원회 운영
3. 대외 평가 관련 업무
4. 예산의 편성 및 조정
5. 조직운영 기본계획 및 부서별 정원의 조정
6. 대학 홍보 및 대외협력

제11조(학과 설치) ①학생교육을 위하여 교수부 산하에 학과를 설치 운영한다.

②학과는 식량작물학과·특용작물학과·버섯학과·채소학과·과수학과·화훼학과·산림조경학과·대가축학과·중소가축학과·말산업학과·수산양식학과 및 교양공통과를 두되 계열별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2013. 7. 8>

③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총장이 보한다.

제12조 <삭제 2010. 9. 20.>

제13조(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 ①학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시설, 부설교육기관, 부속연구소 및 농어업관련 실습실 등을 둘 수 있다.

1. 기숙사
2. 도서관
3. 정보교육센터
4. 어학교육실
5. 평생교육원
6. 농어업·농어촌연구소
7. 농어업관련실습실
가. PTC(Practical Training Center)온실
8. 창업보육센터

9. 대학직장예비군부대 <신설 2012. 5. 30>

②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의 장은 교직원 중 총장이 보한다.<개정 2010. 9. 20.>

③부속시설 및 부설교육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부속시설의 지도감독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10. 9. 20.>

1. 기숙사·도서관 및 대학직장예비군부대 : 교학과 <신설 2012. 5. 30>
2. 정보교육센터, 어학교육실, 농어업·농어촌연구소, PTC : 교수부
3. 평생교육원 및 창업보육센터 : 총장

제14조(산학협력단의 설치)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부 조직으로 하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총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겸임 또는 임명하거나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임용 할 수 있다.

④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2.12.>

제15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 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3. 9. 12>

제16조(정원의 배정)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류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임기제 일반직공무원) ①총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2.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3. 그 밖에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총장은 소속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이 휴직할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동안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③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6.>

제4장 인사관리

제18조 <삭제 2012. 7. 20 >

제19조(인사관리 원칙) 총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①총장은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위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그 밖에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제22조(인사위원회) ①대학 소속 공무원의 채용, 인사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정한 3~5인 이내의 보조기관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 7. 20>

③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5.1.6.>

④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임용시험) ①총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2015.1.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농촌지도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장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임용시험은 신규채용·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종별·직급별로 실시한다.

④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과목) ①소속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은 시험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에서 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3.12.12.>

③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3.12.12., 2015.1.6.>

제25조(응시자격) 소속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자격 및 학력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 ①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지도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27조(전직시험의 과목·방법 및 요건 등) 소속 공무원의 전직시험과목은 시험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승진임용) 5급·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도사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3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제2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제2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되며, 심사기준·심사절차 등은 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총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이하 일반직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지도사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해당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특별승급·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기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2 제3호의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
2.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과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개정 2013.12.12.>

제32조(확인자 및 평정자)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근무성적평가자(성과계약은 1차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성과계약은 2차평가자)가 실시한다.

1. 보조기관의 장에 대한 1·2차 평가는 총장이 실시한다.
2. 5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제2호의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자는 보조기관의 장이, 확인자는 총장이 된다. <개정 2013.12.12.>
3. <삭제 2013.12.12.>

제33조(평정시기) ①4급 및 4급 상당 이상의 보직자와 4급 상당 이상의 보직경력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5급 이하 및 지도직공무원(제1항의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제3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5급 이하 및 지도직공무원(제30조 제1항의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기 위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12.>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지정한 보조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 7. 20>

제35조(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결정) ①확인자 및 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는 「공무원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교육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제36조(교원인사위원회) ①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교수부장, 교학과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학과장으로 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신규임용) ①본교 교원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및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제8조에 의한다.<개정 2013. 3. 23>

②본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

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 시 연령 및 학력 등을 제한하여 공고 하거나 심사과정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③본교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교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항 제2호의 전공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전공과 관련 있는 외부의 전문가로 임명한다.

⑤제3항의 채용심사를 하기 위한 연구실적물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분야의 논문으로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된 200%이상으로 하고, 석사 학위 논문은 100%, 박사 학위논문은 200%로 인정하고 해당되는 논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교원으로 신규채용 된 자를 임용 및 임용제청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등을 실시한 후 본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된 자가 국가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의 신원 조회는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자가 입학정원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신규임용직급) 전임교원을 신규임용 할 때의 직급 설정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각호의 규정이 정하는 자격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부교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1. 부교수 : 타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공 관련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및 4년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삭제 2013. 2. 1>

제39조(임용기간) 본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신규 임용할 때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2. 1>

1. 교수 : 정년
2. 부교수 : 8년
3. 조교수 : 4년

제40조(재임용) ①본교 교원의 재임용 및 재임용제청은 당해 직급 기간동안에 제4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연구 실적이 있어서 그 실적물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및 본교 교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심의하여 재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③국외여행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귀국할 때까지 보류한다. 다만, 재임용 보류기간은 임용기간 만료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가 평균 60점(교육실적 20점, 연구실적 10점, 봉사실적 3점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승진임용) ①본교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3. 2. 1>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소요연수 4년 이상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소요연수 5년 이상

②본교 교원의 승진임용은 제1항의 승진 소요연수가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점으로 하여 초과한 교원으로서 당해 직급기간동안에 제41조 규정의 연구 실적이 있어서 실적 물은 각호와 같이하여 승진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부교수 승진임용 시는 200%이상으로 하되 현장연구, 컨설팅, 산학협력실적으로 50%이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2. 교수 승진임용 시는 300%이상으로 하되 현장연구, 컨설팅, 산학협력실적으로 100%이내를 대체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총장이 연구실적물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본교 교원 및 타 대학 교원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 등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우”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승진임용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국제저명학회지(학술 잡지총목록 ISI Master Journal List 등재)와 국내저명학회지(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는

심사를 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④총장은 제2항의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수부장 또는 해당 학과장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본교 교원이 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직전의 직급으로 재직하는 기간동안 1주간 이상의 국내·외 연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제5항의 국내·외 연수실적의 범위와 기준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⑦총장이 본교 교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 임용 대상 교원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결과, 국내·외 연수실적,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능력 등에 대하여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진 임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⑧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교육실적 30점, 연구실적 15점, 봉사실적 5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①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본교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정년보장임용을 추진하기 1개월 전에 교수부장, 교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본 대학 교원(조교수 이상,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원 2인 이상) 또는 대학 외 인사를 포함하여 전체 5~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연구실적, 사제동행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본교 발전에 참여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한다.

1. 연구실적 및 연수실적 : 제38조의 부합여부

2. 사제동행 교육능력, 본교발전 참여도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는 교수업적평가자료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3. 심사는 수, 우, 미, 양, 가 로 심사하며 평균 “우” 이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④본교의 정년보장임용대상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직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부터 전 항목에 대한 합격 또는 “우”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본교 교원 정원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4조(연구실적 및 연수실적의 범위와 심사기준) ①본교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 저서 및 특허취득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계약제 임용) ①총장은 2004년 6월 15일 이후 신규 임용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한다.

1. 근무기간은 제36조의 임용기간을 준용한다.

2. 급여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나. 그 밖에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 한다.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성적평정) ①교수의 근무성적평정은 “교수업적평가” (이하 “업적평가” 이라 한다)로 한다.

②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47조(평가의 기간) ①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평가는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하며,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수시평가는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교수부장, 교학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수부장, 부위원장은 교학과장이 된다.

②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1. 업적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2. 업적평가 관련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업적 평가 우수 교수 선정 및 추천
4. 연구보조비(성과급) 지급 심의 등
5. 그 밖에 교수업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49조(평가기준) ①교수업적 평가는 교육실적 60%, 연구실적 20%, 봉사실적 10%, 총장평가 10%로 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최종 점수로 한다.
<개정 2010. 9. 20.>

②총장은 20%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교원에 대하여 총점기준 2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운영 발전에 특별히 노력한 교원
2.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교원

제50조(평가결과의 활용) 교수업적 평가결과를 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교수임용 및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조교 인사 운영

제51조(신규임용 조교의 자격) 본교 조교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및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제8조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1.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2. <삭제 2013. 3. 23>

제52조(조교배정) 조교는 학과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속시설에 배치할 수 있다.

제53조(임용절차) ①조교 임용은 해당 학과장 또는 부속시설장이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조교신규임용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개정 2013. 3. 23>

- ②신규임용 시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면접위원은 교수부장, 교학과장, 해당 학과장(부속시설의 장) 및 학과 교수전원(부속시설은 교수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조교로 임용 제청된 자는 서류검토 후 총장이 임용한다.

제54조(재임용) ①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2회까지 재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장기임용이 필요로 하는 조교는 4회까지 할 수 있다.

②3회 이상의 조교 재임용은 근무실적이 특출하여 본교가 필요로 하는 자로서 학과장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교무행정 및 부속시설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교에 한하여 총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4회 이상 재임용할 수 있다.

④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⑤조교재임용은 추천서 및 조교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여 재임용 예정 30일전 까지 총장에게 재임용을 제청한다.

제55조(해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1조의 임용기간이 만료 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군 입대
3. 6개월 이상의 해외유학
4. 그 밖에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56조(임무) 조교는 학과교수(부속시설의 장)를 도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수의 수업 및 학술연구 활동 보조
2. 학과운영에 따른 행정처리
3. 학생지도 등

제57조(근무성적평정) ①조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급 연구보조비” (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심의로 한다.

②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58조(성과급 지급 심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조교의 성과급 관련 내용심의

가. 업무실적, 학교발전 기여도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의 범위 및 실적심사에 관한 사항

나. 심사결과에 따른 조교별 성과급 지급비율 책정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10. 9. 20.>

제59조(평가기준) ①평가는 업무실적 40%, 학교발전 기여도 30%, 직무수행태도 30%로 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최종점수로 한다.

②총장은 20%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조교에 대하여 총점기준 2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운영 발전에 특별히 노력한 조교
2.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조교

제60조(평가대상 기간) 조교의 성과급 심사기간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으로 한다.

제61조(다른 법령적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예산 및 회계

제62조(예산의 운용범위) 대학의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 운영기관 항목으로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제63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학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제64조(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① 대학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관리법」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65조(예산 및 회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학의 예산의 운용·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예산의 전용) ①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총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장관·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예산의 이월)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8조(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① 총장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도모하고 소속공무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발전기금 조성방안과 집행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69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제70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한국농수산대학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교수부장, 운영지원과장, 교학과장, 기획조정팀장 및 총장이 추천하는 직렬별 대표 각 1~2인이 된다.<개정 2010. 9. 20.>

③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연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과 협의한 후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71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을 대체하여 한국농수산대학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을 대체하여 한국농수산대학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시행으로 조정되는 5급 1명은 2016년 8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8월 15일 이후 그 조정된 정원은 6급 1명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대학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15호)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한국농수산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국농수산대학공무원정원표(제15조 관련)

총 계	87
특정직 계	43
교수·부교수·조교수	33
조교	10
일반직 계	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총장)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행정주사	3
전산주사	1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농촌지도사	1
전산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간호주사보	1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6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4
운전서기보	2
조리서기보	5
농촌지도관	1
농촌지도사	2
기계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급(생활체육담당)	1
전문경력관 나급(예비군담당)	1

[별표 2]

한국농수산대학공무원정원표(제15조 단서 관련)

총 계	87
특정직 계	43
교수·부교수·조교수	33
조교	10
일반직 계	4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총장)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2
행정주사	4
전산주사	1
사서주사	1
식품위생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농촌지도사	1
전산주사보	1
간호주사보	1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6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4
운전서기보	2
조리서기보	5
농촌지도관	1
농촌지도사	1
기계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급(생활체육담당)	1
전문경력관 나급(예비군담당)	1

[별표 3]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별도정원표 (제15조의2 관련)

총 계	1
일반직 계	1
6급	1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정	2006.01.02.	종자관리소	훈령 제136호
개정	2006.04.25.	종자관리소	훈령 제140호
개정	2006.07.06.	종자관리소	훈령 제141호
개정	2006.11.01.	종자관리소	훈령 제143호
개정	2007.02.09.	종자관리소	훈령 제145호
개정	2007.11.30.	국립종자원	훈령 제150호
개정	2008.03.10.	국립종자원	훈령 제176호
개정	2009.01.01.	국립종자원	훈령 제180호
개정	2009.04.30.	국립종자원	훈령 제182호
개정	2009.06.24.	국립종자원	훈령 제184호
개정	2009.10.01.	국립종자원	훈령 제185호
개정	2010.02.26.	국립종자원	훈령 제186호
개정	2010.04.05.	국립종자원	훈령 제188호
개정	2010.05.06.	국립종자원	훈령 제189호
개정	2010.09.20.	국립종자원	훈령 제192호
개정	2010.12.01.	국립종자원	훈령 제197호
개정	2011.05.18.	국립종자원	훈령 제199호
개정	2011.06.15.	국립종자원	훈령 제200호
개정	2011.10.25.	국립종자원	훈령 제205호
개정	2011.11.24.	국립종자원	훈령 제207호
개정	2012.01.30.	국립종자원	훈령 제212호
개정	2012.03.26.	국립종자원	훈령 제214호
개정	2012.05.31.	국립종자원	훈령 제216호
개정	2012.07.20.	국립종자원	훈령 제218호
개정	2013.02.01.	국립종자원	훈령 제223호
개정	2013.03.26.	국립종자원	훈령 제224호
개정	2013.07.10.	국립종자원	훈령 제227호
개정	2013.09.12.	국립종자원	훈령 제228호
개정	2013.12.12.	국립종자원	훈령 제230호
개정	2014.03.11.	국립종자원	훈령 제233호
개정	2014.07.21.	국립종자원	훈령 제237호
개정	2015.01.06.	국립종자원	훈령 제2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제2조(적용범위) 종자원의 조직·인사·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11.30.>

제3조(운영원칙) ① 종자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개정 2007.11.30.>

② 종자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개정 2007.11.30.>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종자원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여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품종의 성능을 관리하며, 주요 식량작물의 우량 보급종을 생산·공급하며, 유통종자 품질관리와 종자품질검정에 관한 연구와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종자의 유통을 촉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1.30., 2013.07.10. 2014.07.21.>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3. 신품종 보호 및 국가품종목록등재를 위한 재배시험
4. 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 및 보급
5. 농작물 종자의 검사와 보증<개정 2013.07.10. 2014.07.21.>
6.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개정 2013.07.10.>
7. 종자 관련 산업 및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정 2013.07.10.>
8.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사업발굴, 제도 도입 <신설 2014.07.21.>
9. 종자 품질검정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 <신설 2014.07.21.>

제5조(사업운영계획) ①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기관운영의 개선과 종자관리 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연도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년도부터의 사업계획은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5.01.06>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종자원이 달성할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30.>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승진, 전보), 포상(국외연수, 성과금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11.30.>

제8조(위임·전결 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내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11.30.>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① 종자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동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6.07.06, 2007.11.30, 2009.1.1, 2013.12.12.>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11.30.>

제10조(본원에 두는 과) ① 본원에 운영기획과·종자산업지원과·식량종자과·품종보호과 및 종자검정연구센터를 둔다. 단, 종자검정연구센터는 5급팀제로 한다.<개정 2006.11.01., 2007.11.30., 2014.7.21.2015.01.06>

② 운영기획과장,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품종보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11.01., 2014.07.21.>

③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11.01. 2014.07.21>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법령안과 예규안의 심사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6. 원내 기획·변화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개정 2013.07.21.>
 7. 기타 종자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7.11.30.>
- ④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07.21. 개정 02015.01.06>

1. 종자산업육성 기획, 사업발굴, 제도 도입
2. 종자산업법 및 하위규정 제·개정
3. 종자 및 육묘산업 육성 지원
4. 종자통계조사 및 영양체·육묘 품질관리 제도·규정 마련
5.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계획 수립 및 운용
6.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채종 등 지원사업
7. 민간육종가 교육훈련 및 신품종 육성 지원
8. 종자산업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
9. 종자의 유통조사 및 수출입 관리
10. 종자용 LMO 수출입 승인 및 국내 유통관리
11. 종자유통조사 관련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
12. 종자분쟁 제도운영 및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13.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14. 개도국 교육훈련 지원 및 협력증진

⑤ 식량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07.21.>

1. 종자생산과 공급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종자관리에 관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3. 종자 생산·수매·공급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4. 종자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6. 원원종, 원종 생산비 지원 예산운영 및 사업관리
7. 민간·지자체 식량종자 생산·공급 참여 지원
8. 종자검사 규격 제개정 및 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9. 원원종·원종·보급종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10.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11. 보급종 종자정선 및 제품 보관·출고
 12. 정부 보급종 품질관리 및 보급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종자정선시설 현대화 예산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관한 사항
 14. 종자관리 정보화, 행정 정보화 등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 ⑥ 품종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07.21. 2015.01.06>
1.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관련 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품종보호 및 재배시험 관련 예산운영
 3. 품종보호 심사인력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4. 품종보호출원의 접수·심사 및 등록
 5.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심사 및 등록
 6. 품종보호 침해분쟁에 대한 업무
 7.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의 접수·심사 및 등재
 8. 품종의 생산·판매신고에 관한 사항
 9. 품종보호 상담 및 상담센터 운영
 10. 재배시험 및 재배심사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및 지도·감독
 11. 품종보호출원품종·국가목록등재신청품종 특성조사
 12.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및 국가목록품종의 성능유지에 대한 관리
 13.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14. 재배시험 포장·시설 및 인력 관리
- ⑦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07.21. 개정 2015.01.06>
1. 법정종자 시료의 품질검정 및 보존·관리
 2. ISTA 인증시험실 운용, 수출입종자 검정 및 인증서 발급
 3. 정부보급종 상위단계 종자 유전자 순도분석 및 종자전염병 검정
 4. 품종식별을 위한 유전자 D/B구축, 품종진위 및 순도 확인
 5. 품종의 병저항성 조사, 종자전염병 병리검정 및 연구
 6. 종자분쟁 관련 시료관리 및 시험분석
 7. 과수묘목 원종 및 영양체 종자전염병 검정
 8. 종자검사원 및 민간 종자관리사 등 종자검정 전문교육

- 9. 종자검정·유전자검정·병리검정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 10. 영양변식 종자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 정립 및 검정기법 개발
- 11. 종자연구 관련 학술활동 지원

제11조(사무분장)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제12조(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개정 2007.11.30, 2013.03.26, 2013.12.12.>

② 지원에 지원장 1인을 두되, 충남지원장, 전북지원장, 전남지원장, 경북지원장 및 경남지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원장, 동부지원장 및 서부지원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강원지원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충북지원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11.30, 2009.4.30, 2010.09.20, 2013.07.10., 2013.09.12. 2015.01.06>

③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11.30.>

제13조(지원의 사무분장) ① 보급종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은 운영지원, 종자 생산·정선·검사·보증, 종자유통관리 등 종자산업지원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07.02.09, 2007.11.30., 2013.07.10. 2014.7.21>

② 재배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은 운영지원, 재배시험 및 재배심사, 종자 검사·보증, 종자유통관리 등 종자산업지원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07.02.09, 2007.11.30., 2013.07.10. 2014.7.21>

③ 보급종과 재배시험 업무를 병행 담당하는 지원은 운영지원, 종자 생산·정선·검사·보증, 재배시험 및 재배심사, 종자유통관리 등 종자산업지원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07.02.09, 2007.11.30., 2013.07.10. 2014.7.21>

④ 지원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종자원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11.30.>

제14조(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정원의 운영) ①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7.02.09, 2007.11.30, 2008.3.10, 2013.12.12.>

② 원장은 3·4급 정원에 대해 4급 정원(3·4급 정원포함)의 100분의 15를, 4·5급 정원은 5급 정원(4·5급 정원포함)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총

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자원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30.>

제14조의 2(임기제공무원) ① 원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5, 개정 2007.11.30, 2013.12.12.>

1. 연구·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7.11.30.>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결원보충 인정)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12.12.>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2.>

④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2.>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2.>

제1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2.1.>

제15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직제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1.30.>

제16조 (팀제 조직의 운영) <삭제, 2014.7.00>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제18조(직무대리) ① 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7.11.30.>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기획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7.11.30., 2015.01.06>

2. 지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2007.11.30.>

제19조(종자생산 인력의 지원근무) ① 원장은 특정지역에 종자생산 수요가 새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종자생산 수요가 급증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지원장은 상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지역에 지원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제4장 인사관리

제20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7.11.30.>

제21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경력·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외 교육 및 훈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위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9.12.>

제22조 삭제<2012.7.20.>

제23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11.30.>

-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30.>
-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3~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주무로 한다.<개정 2007.11.30.>
- ④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 ④ 전직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필기 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의 단계를 일부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25조(임용시험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응시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합격자 결정방법·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관계법령의 준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12.12.>
-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방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기능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3.12.12.>

1. 차량운전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방호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12.12.>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개경쟁채용은 2년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6월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학업의 계속
2.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희망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체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28조(평가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원장이 지정한다. 원장은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29조(근무성적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제30조(성과목표의 설정) 원장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종자원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30.>

제31조(근무성적의 평가방법 등)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③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원장은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7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자원의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33조(평정시기)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에서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한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진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승진 임용한다.<개정 2007.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승진 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보수 및 예산운용) ①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지급기간 및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5.01.06>

② 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수당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따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③ 원장은 제1항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7.06, 2007.11.30.>

제37조(성과 상여금) ① 근무성적 또는 통합성과평가에 의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2.12.>

②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통합성과평가의 실시대상·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장관이 정하는 통합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2013.12.12. 2015.01.06>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8조(일반원칙) ① 일반회계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기존 회계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회계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3.11.>

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제39조 삭제<2006.07.06.>

제40조(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운영 수입금
2. 종자원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개정 2007.11.30.>
3.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지출금
4. 예비비

제41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 회계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채권관리관을 겸한다)
4. 물품관리관
5. 유가증권취급공무원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물품출납공무원
8. 물품운용관
9.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0.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
11. 재산관리관

② 지원에는 제1항의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11.30.>

제42조(예산의 이·전용) ① 원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 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원장은 세출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원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전용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제43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제44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

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1.30.>

제45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의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3.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46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계약)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관련법령 및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50조를 제51조로 하며,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06.4.25.>

제50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세부규정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종자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4.25, 개정 2007.11.30.>

부 칙

이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25.>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06.>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0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09.>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30.>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10.>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30.>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24.>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행정서기 2명과 행정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10급 사무원 3명의 감축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의2(행정서기 2명과 행정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10급 사무원 3명의 감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 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 <2010.02.26.>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4.05.>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국립종자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3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을 대체하여 국립종자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9.20.>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0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국립종자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3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을 대체하여 국립종자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6.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3.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7.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0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3.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종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립종자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신설되는 종자검정연구센터는 2017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종자검정연구센터 소관업무는 종자산업지원과에서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기계운영주사보 1명, 기계운영서기 1명은 2017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기계운영서기보 2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종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06.04.25, '06.07.06, '06.11.01, '07.02.09, '07.11.30, '08.03.10, '09.04.30, '09.10.01, '10.02.26, '10.04.05, '10.05.06, '10.09.20, '11.05.18, '11.06.15, '11.10.25, '11.11.24, '12.01.30, '12.03.26, '12.05.31, '12.7.20, '13.07.10, 2013.12.12. 2014.03.11. 2014.07.21. 2015.01.06. >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기준정원표, 제14조제1항 관련)

총계	203
일반직 계	11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농업사무관	9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6
농업주사	15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2
농업주사 또는 공업주사	1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3
공업주사	1
공업주사(전담직위)	3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7
농업주사보	19
공업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12
농업서기	7

공업서기	3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
행정서기보	2
농업서기보	2
공업서기보	8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10
시설관리서기보	1
방호서기보	3
농업연구관	6
농업연구사	27
기계운영주사	2
기계운영주사보	1
전기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	5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5
열관리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5

[별표 1의 2] <개정 ' 07.02.09, '07.11.30, ' 08.03.10, '09.01.1, ' 09.04.30, ' 09.06.24. '09.10.01. ' 10.02.26, '10.05.06, ' 10.09.20, ' 11.05.18, ' 11.06.15, ' 11.10.25, ' 11.11.24, ' 12.01.30, '12.03.26, ' 12.05.31, '12.7.20, ' 13.07.10, 2013.12.12. 2014.03.11. 2014.07.21. 2015.01.06.>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운영정원표, 제14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203
일반직 계	9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농업사무관	7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9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6
농업주사	13
전산주사	2
공업주사	1
공업주사(전담직위)	3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2
농업주사 또는 공업주사	1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6
행정주사보	4
농업주사보	15
공업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5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6
농업서기	9
공업서기	3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0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
농업서기보	5
공업서기보	8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
운전서기보	5
시설관리서기보	1
방호서기보	3
농업연구관	4
농업연구사	23
기계운영주사	3
기계운영주사보	2
전기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	5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2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4

[별표 2] <신설 2013.02.01, 개정 2013.09.12. 2015.01.06.>

국립종자원 공무원 별도정원표 (제14조의3 관련)

총 계	3
일반직 계	3
6급	1
8급	1
연구사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309
제 2 장 소속책임운영기관	311
제 3 장 중앙책임운영기관	322
제 4 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324
부 칙	32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7.30	법률 제 5711호
타법개정	1999. 5.24	법률 제 5982호
타법개정	2001. 1.29	법률 제 6400호
일부개정	2002. 6.26	법률 제 6666호
일부개정	2006. 1. 1	법률 제 7259호
일부개정	2006. 5. 1	법률 제 7770호
타법개정	2007. 1. 1	법률 제 8050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타법개정	2009. 1. 1	법률 제 9280호
일부개정	2009. 4. 1	법률 제 9303호
일부개정	2011. 6. 9	법률 제10436호
타법개정	2012. 1. 1	법률 제10699호
타법개정	2013.12.12	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제1장 총 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3.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운영 원칙)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3.3.23., 2014.11.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3.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평가·인사·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

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2.12.11.>

② 기관장의 채용 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⑤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의2(채용계약의 해지)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거쳐 그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3.8.]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운영과 공무원의 정원(定員)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 재정의 경제성 제고
2. 서비스 수준의 향상
3. 경영의 합리화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 삭제 <2008.12.31.>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2.12.11.]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경력·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의 시험과목·방법과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관계 법령(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결원 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승진) 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5.23.]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1.3.8.,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 삭제 <2008.12.31.>

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8.>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전문개정 2008.12.31.]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삭제 <2004.12.30.>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2.3.25.]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9조(비용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4조 삭제 <2008.12.31.>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절 조직·인사·예산 <신설 2005.12.29.>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7조(인사 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1.3.8.>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신설 2008.12.31.〉**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의 보고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8.12.31.]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8.12.31.]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부 칙 〈제5711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27조 내지 제39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특별회계(이하 "중전의 특별회계"라 한다)의 1999연도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중전의 특별회계의 1999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0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등의 승계) 중전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으로 한다.

<1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6666호,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부 칙 〈제7259호, 2004.12.30.〉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70호, 2005.12.29.〉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16조(정원 및 정원 계획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4> 까지 생략

<23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제7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13조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항제2호, 제4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280호, 2008.12.31.〉

(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제7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9303호, 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소속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사항은 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행한 심의·평가로 본다.

부 칙 〈제10436호, 2011.3.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본다.
- ③(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0699호, 2011.5.23.〉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 〈제11530호, 2012.12.11.〉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7>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

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
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장 총 칙	335
제 2 장 소속책임운영기관	337
제 3 장 중앙책임운영기관	349
제 4 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350
제 5 장 보 칙	352
부 칙	353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405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407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412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413
[별표 3의2]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417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	418
[별지서식] 지정기탁서	4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1. 9.15	대통령령	제23138호
타법개정	2012. 1. 1	대통령령	제23277호
일부개정	2012. 1.26	대통령령	제23445호
일부개정	2012.12.20	대통령령	제24240호
타법개정	2012. 3.26	대통령령	제23676호
타법개정	2012. 3.26	대통령령	제23678호
타법개정	2012. 4.17	대통령령	제23730호
타법개정	2012. 5. 1	대통령령	제23764호
타법개정	2012. 6. 1	대통령령	제23813호
타법개정	2012. 7. 4	대통령령	제23930호
타법개정	2012. 7.13	대통령령	제23948호
타법개정	2012. 7.24	대통령령	제23980호
타법개정	2012. 7.24	대통령령	제23981호
일부개정	2013.11.13	대통령령	제24839호
일부개정	2013.12.12	대통령령	제24983호
일부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65호
일부개정	2013. 7.10	대통령령	제24660호
일부개정	2013. 9.26	대통령령	제24772호
일부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7호
일부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27호
일부개정	2014. 3.11	대통령령	제25247호
타법개정	2014. 4. 2	대통령령	제25286호
일부개정	2014. 6. 3	대통령령	제25366호
일부개정	2014. 7. 1	대통령령	제25438호
일부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6015호

제1장 총 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각종 정보·통계에 대한 조사·분석·생산 및 제공
 2. 각종 물품·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에 대한 시험·연구·개발 및 지원
-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발전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잡지·방송·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3. 예술작품·유물·자료 등의 수집·전시·교육 및 연구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대여
-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환자의 진료·지도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3. 의료 기술의 시험·연구
-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변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6.7.]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 [전문개정 2011.6.7.]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6.4.28.>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6.4.28.>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요건, 채용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2014.11.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7.1.>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4.7.1.>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4.7.1.]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등)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31.>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5의2.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의 채용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③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6.7., 2011.11.1.>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1.6.7.]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채용계약의 해지)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조(채용기간의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0.3.31.]

제7조(기관장의 보수)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31.]

제2절 운영 및 평가 <개정 2006.4.28.>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에서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하부기구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
3. 그 밖에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31.]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6.7.>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제11조 삭제 <2009.3.31.>

제12조 삭제 <2009.3.31.>

제13조 삭제 <2009.3.31.>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공표)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3.]

[중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4.6.3.>]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4.6.3.>]

제3절 조직 및 정원 <개정 2006.4.28.>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전문개정 2009.3.31.]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②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3.12.11.>

③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4.6.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14.11.19.>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3.12.11.]

제4절 인사관리 <개정 2006.4.28.>

제18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 기관장은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1. 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제20조(응시자격 등)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0.]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2.12.20.>

[전문개정 2009.3.31.]

제5절 예산 및 회계 <개정 2006.4.28.>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7.]

[중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1.6.7.>]

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6.7.>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자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11.15., 2011.6.7.>

[본조신설 2009.3.31.]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1.6.7.>]

[제목개정 2011.6.7.]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7.]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31.]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8조(예산의 이월)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9조(비용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연구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또는 시설관리형 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6.3., 2014.11.19.>

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신·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3. 기탁물품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7.]

[중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11.6.7.>]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6.4.28.>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1.6.7.>]

제29조의4(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의 구성·운영) 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 의 회 의 를 소집하며, 회의 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 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9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11.6.7.>]

제29조의5(운영심의회 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 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제29조의4에서 이동 <2011.6.7.>]

제29조의6 삭제 <2009.3.31.>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공표)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는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2.12.20.>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7.]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중전 제29조의12는 제29조의13으로 이동 <2011.6.7.>]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3.31.]

[제29조의12에서 이동, 중전 제29조의13은 제29조의14로 이동 <2011.6.7.>]

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3.31.]

[제2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14는 제29조의15로 이동 <2011.6.7.>]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6.3.]

제5장 보 칙 <개정 2012.12.20.>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의 범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4.11.19.>

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인사·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12.20.]

부 칙 〈제16490호, 1999.7.29.〉

-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632호, 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957호, 2000.8.28.〉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958호, 2000.8.28.〉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 칙 〈제17069호,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04호, 2001.1.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부 칙 〈제17170호, 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73호, 2001.12.3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부 칙 〈제17529호, 2002.3.2.〉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부 칙 〈제17597호, 2002.5.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7619호, 2002.6.1.〉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 칙 〈제17637호, 2002.6.25.〉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734호, 2002.9.11.〉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 칙 〈제17844호, 2002.12.30.〉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 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 칙 〈제17918호, 2003.2.2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8063호, 200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067호, 2003.7.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 칙 〈제18152호, 2003.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12호, 2004.1.9.〉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공학 연구소	농 촌 진 흥 청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114인
축 산 연구소	농 촌 진 흥 청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34인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 칙 〈제18213호, 2004.1.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18275호, 2004.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399호, 2004.5.24.〉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18호, 2004.8.14.〉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상홍보원	국정홍보처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사항	104인
-------	-------	--	------

②생략

부 칙 〈제18654호, 2004.12.31.〉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 칙 〈제18786호, 2005.4.15.〉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789호, 2005.4.15.〉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부 칙 〈제18790호, 2005.4.1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부 칙 〈제18791호, 2005.4.1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 칙 〈제18924호, 2005.6.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944호, 2005.7.1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 칙 〈제19127호, 2005.11.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230호, 2005.12.3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235호, 2005.12.30.〉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237호, 2005.12.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284호, 2006.1.26.〉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제19341호, 2006.2.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350호, 2006.2.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청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부 칙 〈제19362호, 2006.2.28.〉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369호, 2006.3.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국립수산 과학원	해양수산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27인
-------------	-------	--------------------------	------

부 칙 〈제19379호, 2006.3.10.〉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418호, 2006.3.29.〉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부 칙 〈제19439호, 2006.4.6.〉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441호, 2006.4.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부 칙 〈제19462호, 2006.4.28.〉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제19526호, 2006.6.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제19561호, 2006.6.2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관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

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9588호, 2006.6.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596호, 2006.6.30.〉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634호, 2006.8.1.〉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685호, 2006.9.22.〉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721호, 2006.10.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749호, 2006.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751호, 2006.12.12.〉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제19792호, 2006.12.2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9795호, 2006.12.2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강원지방 통 계 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83인
경남지방 통 계 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91인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관중"대전·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별표 3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강원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남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 칙 <제19853호, 2007.1.2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876호, 2007.2.8.〉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907호, 2007.2.28.〉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928호, 2007.3.1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부 칙 〈제19931호, 2007.3.1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 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9인
----------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소속)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생략

부 칙 〈제19983호, 2007.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 칙 〈제20013호, 2007.4.2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 칙 〈제20049호, 2007.5.1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세출"로 한다.

③생략

부 칙 〈제20057호, 2007.5.1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부 칙 〈제20079호, 2007.6.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 〈제20132호, 2007.6.28.〉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의료원계정 |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

부 칙 〈제20146호, 2007.7.2.〉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부 칙 〈제20172호, 2007.7.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 칙 〈제20175호, 2007.7.18.〉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제20220호, 2007.8.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부 칙 〈제20235호, 2007.8.2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 칙 〈제20271호, 2007.9.1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5인"을 "122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관리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소속)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실
----------------------	---

부 칙 〈제20279호, 2007.9.18.〉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부 칙 〈제20402호, 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및 ⑦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20420호, 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703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
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중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
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
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
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
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
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중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
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
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
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
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
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중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
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울산지방통계청(중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897호, 2008.7.3.〉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 〈제20964호, 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074호, 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

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207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392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407호, 2009.4.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83명
----------	------	--	------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소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

부 칙 〈제21453호, 2009.4.30.〉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우량 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耕種) 확립에 관한 사항	172명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601명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
-------------------------	---------------------------

② 및 ③ 생략

부 칙 〈제21457호, 2009.4.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2명

부 칙 〈제21703호, 2009.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799호, 2009.11.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1명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8명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8명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명

부 칙 〈제21920호, 2009.12.3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 〈제22023호, 2010.2.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4명

부 칙 〈제22064호, 2010.2.2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6명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동물 질병 방역, 수산기술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610명
---------	---------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2명

부 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국립재활원의 소속란·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7명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4명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명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7명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6명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제22092호, 2010.3.2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4명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3명

부 칙 〈제22105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부 칙 〈제22115호, 2010.4.1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사항	113명
-------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
 상실"로 한다.

부 칙 〈제22166호, 2010.5.2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84명
----------	------	--	------

부 칙 〈제22276호, 2010.7.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184명
-------	-------	---	------

부 칙 〈제22341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437호, 2010.10.13.〉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4명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4명

부 칙 〈제22454호, 2010.10.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3명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9명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22459호, 2010.10.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22484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연구관 9명, 연구사 4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2명, 기능9급 5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644호, 2011.1.2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3명

부 칙 〈제22681호, 2011.2.2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4명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0명

부 칙 〈제22814호, 2011.4.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명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22920호, 2011.5.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6명

부 칙 〈제22930호, 2011.5.23.〉

(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으로 한다.

부 칙 〈제22958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

정 중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은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통계청의 공무원 정원 4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통계청의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2. 동북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
3. 호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4. 동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5. 충청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부 칙 〈제23045호, 2011.7.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5명

부 칙 〈제23138호, 2011.9.15.〉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7명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6명

부 칙 〈제23277호, 2011.11.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 〈제23445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51명(5급 2명, 6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사 26명, 기능10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3676호, 2012.3.2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6명

부 칙 〈제23678호, 2012.3.2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6명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6명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2명

부 칙 〈제23730호, 2012.4.17.〉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5명

부 칙 〈제23764호, 2012.5.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2명

부 칙 〈제23813호, 2012.5.23.〉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4명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4명

부 칙 〈제23930호, 2012.7.4.〉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7명

부 칙 〈제23948호, 2012.7.1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9명

⑥ 생략

부 칙 〈제23980호, 2012.7.2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7명

부 칙 〈제23981호, 2012.7.2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9명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7명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부 칙 〈제24240호, 201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방재연구원에 관한 부분,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46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74명 및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80명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수산·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농림수산물부 소속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53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③ 항만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토해양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97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76명은 각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

원으로 보고,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방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24660호, 2013.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772호, 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839호,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정한다)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333명으로 한다.

제3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 기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속 기관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한다.

부 칙 〈제24983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6급 12명, 7급 7명, 8급 13명, 9급 18명, 연구

관 3명, 연구사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8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립국제교육원: 6급 1명
4. 국방홍보원: 9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급 1명, 연구관 1명
6.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9급 1명
8. 국립종자원: 6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6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6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4. 국립마산병원: 8급 1명
15.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6.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7. 국립생물자원관: 6급 1명
18. 국토지리정보원: 9급 1명
19.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 경인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동북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2. 호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3.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4. 충청지방통계청: 6급 1명, 8급 2명
25. 국립문화재연구소: 9급 1명, 연구사 1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6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30. 항공기상청: 7급 1명

부 칙 〈제25247호, 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286호, 2014.4.1.〉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6명"을 "365명"으로 한다.

부 칙 〈제25366호, 2014.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물품의 접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5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 칙 〈제25438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 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관장 채용공고를 한 경우의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5757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5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양안전경비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 214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수산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25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17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25827호, 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01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6명(5급 2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1명, 9급 1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과천과학관: 6급 1명
2. 국립국제교육원: 5급 1명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7급 1명, 연구사 2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현대미술관: 9급 1명
6.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 한국농수산대학: 9급 1명
8. 국립중자원: 7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8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6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9급 1명
14. 국립재활원: 8급 1명
15.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16. 국토지리정보원: 8급 1명
17.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
18. 통계개발원: 5급 1명
19. 경인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0. 동북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22. 동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3. 충청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1명
2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6.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29. 항공기상청: 9급 1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조사연구형 기관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국립중자원 국토지리정보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항공기상청	
	연구형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교육훈련형 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문화형 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의료형 기관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시설관리형 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기타 유형의 기관		특허청
<p>※ 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연구형 기관 중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이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제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사연구형 기관 중 "연구형 기관"이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명칭	소속	직무	총 정원의 한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3명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8명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관련 교류협력,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 초·중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에 관한 사항	73명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에 관한 사항	159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자치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6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59명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항	93명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100명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관광부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 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 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방송에 관한 사항	107명
한국농수산대학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 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 한 사항	87명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의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 리 및 품종 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에 관한 사항	203명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 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303명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 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81명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 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78명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 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14명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 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28명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의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9명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의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5명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314명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에 대한 장기·단기 연구사업 계획 및 생물자원 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조정 및 종합, 생물자원의 수집·보전·관리·조사 및 연구,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생물자원의 홍보·전시 등 관련 사항, 환경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9명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측량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국가 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측량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측량·지도 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1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선박의 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7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선박의 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69명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동물 질병의 방역, 수산기술 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546명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 통계 개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3명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61명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14명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65명
동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239명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250명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과 전투경찰순경의 질병 진료에 관한 사항	586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76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채소, 과수, 화훼(花卉),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 개발, 유전육종(遺傳育種)기술, 유전자원 관리·종묘 생산, 재배법 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 관리 및 재해 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特作産物)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329명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 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 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 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 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323명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 육종·임업생산기술 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청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1명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113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국민안전처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별표 1의3] 삭제 <2009.3.31.>

[별표 1의4] 삭제 <2008.8.7.>

[별표 1의5] 삭제 <2009.3.3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서울과학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자치부 소속)	사무소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지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센터 또는 진료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 소속)	진료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소속)	재활연구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소, 관리센터 또는 연구소 소속의 연구센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사무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사무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사무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동남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사무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소속)	사무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연구소 또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 또는 출장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센터 또는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소속)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항공기상청 (기상청 소속)	공항기상대 또는 공항기상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제1항 관련)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중앙과학관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천과학관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국제교육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홍보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극장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현대미술관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한국정책방송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한국농수산대학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교원,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자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서울병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나주병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부곡병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춘천병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공주병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마산병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목포병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활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생물자원관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토지리정보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가.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가.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산과학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통계개발원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인지방통계청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동북지방통계청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호남지방통계청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동남지방통계청	가.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충청지방통계청	가.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찰병원	가. 경정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경감 이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문화재연구소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축산과학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산림과학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가.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기상청	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가. 경정, 5급 공무원 및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나. 경감 이하,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비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권을 포함한다.	

[별표 3의2] <개정 2015.1.6.>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

(제22조의3제2항 관련)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p>국립국제교육원 국방홍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토지리정보원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항공기상청 해양경비안전정비창</p>	<p>국립생물자원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p>

[별표 4] <개정 2015.1.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 (제23조제1항 관련)

계정의 명칭	내용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국립과천과학관계정	국립과천과학관의 세입·세출
국립서울병관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국립나주병관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국립부곡병관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국립춘천병관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국립공주병관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국립마산병관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국립목포병관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경찰병관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별표 5] 삭제 <2014.6.3>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11.6.7.>

지정기탁서

1. 기탁자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2. 기탁물품:

점(명세: 별첨)

3. 지정기탁 기관:

4. 지정기탁 사유:

5. 사용 용도와 목적(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상기 물품을 지정기탁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농림축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423
제 2 장 정원관리	424
제 3 장 인 사	425
제 4 장 보 수	431
제 5 장 복 무	432
제 6 장 신분 및 권익보장	434
제 7 장 표창 및 징계	435
제 8 장 기 타	437
부 칙	438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자 정원표	440
[별표 2] 징계 양정기준	442

농림축산식품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정	2007. 7. 9.	농림부훈령	제 1275호
일부개정	2011. 3.10.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42호
일부개정	2012.12.27.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348호
일부개정	2012. 7. 4.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308호
일부개정	2013. 4.23.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 7호
일부개정	2014. 2.10.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 115호
일부개정	2014. 3.28.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 1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 ①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부 사용부서(과, 담당관, 팀을 말한다)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정원조정)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6조(기간제근로자 사용)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삭 제>
 8. <삭 제>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

제3장 인 사

제1절 채용 등

제7조(채용권자)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본부 실·국장(정책관 등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②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채용자격조건) 채용권자는 각 실·국(과)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

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시험비용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50조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2(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3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예정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를 취급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무기계약근로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삭제>
6. <삭제>
7.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9.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41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징계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안전행정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예규)에 따른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

칙」을 준용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사실의 확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평가

제17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의2 인사위원회

제18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4(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8조의2 제2항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절 교 육

제19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수

제20조(보수 및 지급일)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보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봉·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1조(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의2(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을 제외한다.

제23조(퇴직금)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5장 복 무

제25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말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상황) ①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출장)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휴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제30조(연차 유급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병가) ①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공가)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3조(특별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에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5일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 ② 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③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④ 복무관리자는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5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삭 제>

③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6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 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7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차별처우 금지) 복무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고충처리) 복무관리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40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종류 및 사유)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 :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

약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2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실·국 주무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조직 또는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의 경우 실·국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의 경우 조직 또는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결 요구) ① 복무관리자는 제4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6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재심청구)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48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49조(경고·주의조치)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안전행정부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기 타

제50조(관리부서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담당부서로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복무·보수·인원·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 경우 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삭제>

제51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275호,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정규직 정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42호, 2011.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08호, 2012.7.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8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호, 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호, 2014.2.1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1호, 2014.3.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3. 4. 23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자 정원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부 서 \ 직 종	계	사무 보조	외국어 자문관	시험 연구 보조	환경 미화원	경비원	시설 관리	기관별 특수직
합 계	847	62	5	133	10	1		636
본 부	21	18	3					
대변인실	4	4						
운영지원과	14	14 ¹⁾						
국제협력국	3		3					
소속기관 계	826	44	2	133	10	1		636
농림축산검역본부	140	25	2	104	1			8 ²⁾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21							621 ³⁾
한국농수산대학	17	15						2 ⁴⁾
국립종자원	48	4		29	9	1		5 ⁵⁾

1) 기록물관리(2명), 콜센터(3명), 차량관리·운전보조(1명), 사서보조(1명), 사무보조(7명, 비서포함)

2) 탐지견사양관리(8명)

3) 농업경영체등록 상시 조사원(621명)

4) 교육·시설전문(2명)

5) 재배시형포장관리(5명)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부 서 \ 직 종	계	사무 보조	외국어 자문관	시험 연구 보조	환경 미화원	조리원	시설 관리	기관별 특수직
합 계	388	52	1	207	11	6	9	102
본 부	15	15						
운영지원과	10	10 ⁶⁾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5	5						
소속기관 계	373	37	1	207	11	6	9	102
농림축산검역본부	234	19	1	207	3		2	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1							81 ⁸⁾
한국농수산대학	43	11				6	7	19 ⁹⁾
국립중자원	15	7			8			

6) 기록물관리(1명), 콜센터(1명), 차량관리·운전보조(1명), 사서보조(1명), 사무보조(6명, 비서포함)

7) 탐지견사양관리(2명)

8) 농업경영체등록 상시 조사원(81명)

9) 졸업생상담관(2명), 과정운영(7명), 마필관리(3명), 초빙교수(7명)

징 계 양 정 기 준

구분	양 정 기 준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채 용 기 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및 필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계약금액(월보수액)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채용방법	<input type="radio"/> 모집공고 계획(공고문 첨부, 공고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 <input type="radio"/>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등) <input type="radio"/> 심사위원 선정 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표준근로계약서(안)

○○○의 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연락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을”은 농림축산식품부 ○○○부서에서 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 ① (임금) “을”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연봉액_____)으로 한다.
-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_____)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 ① “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② 휴게시간 : 12:00 ~ 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 ①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②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③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같음한다.
-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장(관) :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구비서류 >

※ (공 통): 사진(반명함판) 2장,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진술서 각 1부

※ (해당자):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 1부

서 약 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 장(관) 귀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성명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호 봉 :
	직 종 :	
	주 소 :	이 메 일 :
	연 락 처 :	

1.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	----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	-----	----	----

가 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병 역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	------	----	----	----	------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	-------	------	------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	-----	------	------	------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	----	-----	--------	--------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	----	----	------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	----	-----	------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	-------	----------	------

근무성적 평가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	----	----------	-------

승급	호봉	발령년월일
----	----	-------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	----	------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 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input type="checkbox"/> 퇴직()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20 년 월 일			
○○○ 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③주 소				
근 무 사 실 확 인 서	④ 근 무 기 간		⑤ 구분 ※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⑥ 근무부서	⑦ 담당업무
	부 터	까 지			
⑧ 총근무 기간	년 월		⑨ 퇴직당시의 근무자 구분 ※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⑩ 퇴직 사유					
⑪ 용도					

* 「근무사실확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 장의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 장관(장)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②구 분	③성 명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농림축산식품부 기구별 영문명 및 기능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94, Dasom 2-ro, Sejong-Si, 339-012, Korea

Tel : (+82)1577-1020, Internet homepage : <http://www.mafra.go.kr>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MAFRA**, is in charge of following areas: rural policy; agricultural policy; farmland policy; food grain policy; livestock production and marketing; food industry policy;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rketing.

The **MAFRA** seeks world-wide cooperation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and formulates its policie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such as relevant WTO agreements.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has two bureaus: the Policy Planning Bureau; and the Emergency and Security Planning Bureau. The Policy Planning Bureau supervises agricultural administration policies; national assembly affairs; agrifood statistics;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and funds; investment and loan evaluation assessment; chang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quotas; performance management; judicial affairs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Security Planning Bureau develops plans for emergencies; and oversees safety and disaster control.

Rural Policy Bureau

The Rural Policy Bureau sets up the basic medium and long term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lans; makes medium and long term investment and loan plans; nurtures human resources; promotes regional

rural development; rural welfare; policies on women; and rural industry policies.

Agricultural Policy Bureau

The Agricultural Policy Bureau establishes medium and long term agricultural policies; manages farmlands and agricultural funds; establishes and modifies policies on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tabilizes farm income; supports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measures, an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economy.

Food Grain Policy Bureau

The Food Grain Policy Bureau oversees food policies and supply-and-demand schemes; purchases and supplies food grains; deals with farming measures; agricultural mechanization; rationalization of farm water us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intenance; and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supervises cross-border trade and negotiations; develops overseas agriculture; manages import and customs systems;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quarantine programs.

Livestock Policy Bureau

The Livestock Policy Bureau sets up medium and long term livestock policies; oversees supply-and-demand of livestock products and feed; livestock product distribution and protection of animals; and quarantine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Food Industry Policy Office

Food Industry Policy Office consists of three bureaus: the Food Industry Policy Bureau, the Marketing and Consumer Policy Bureau, and the Creative Agrifood Policy Bureau.

Food Industry Policy Bureau

The Food Industry Policy Bureau nurtures food industry; supervises school meals; promotes food processing; traditional food industry; food exports; food service industry and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Marketing and Consumer Policy Bureau

The Marketing and Consumer Policy Bureau is in charge of improving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promoting direct transactions; controlling the quality of agri-food products; protecting consumers; managing the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animal products regarding the country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 stabilizing the production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fruits and vegetables, fruit trees, special crops, flowers, etc.; and supporting the industry of facility horticulture.

Creative Agrifood Policy Bureau

The Creative Agrifood Policy Bureau is responsible for the affairs related to climate change; green growth; creative economy in the context with agri-food products; ICT convergence with the agri-food sector; promo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for agri-food products; promotion of the seed industry; and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sponsible for quarantine of animal, animal products, plants for exports/imports;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surveillance and control, risk analysis of exotic plant pest;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veterinary science;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of veterinary medicine and biological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Responsible for the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management for origin, certification and trace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safety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motion of farm registration system.

Food and Agriculture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Responsible for training the national officials working fo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its related organizations and agri-food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sub-national level) and leading women farmers and rural village leader and leading producers of agri-food industry and leading agri-food consu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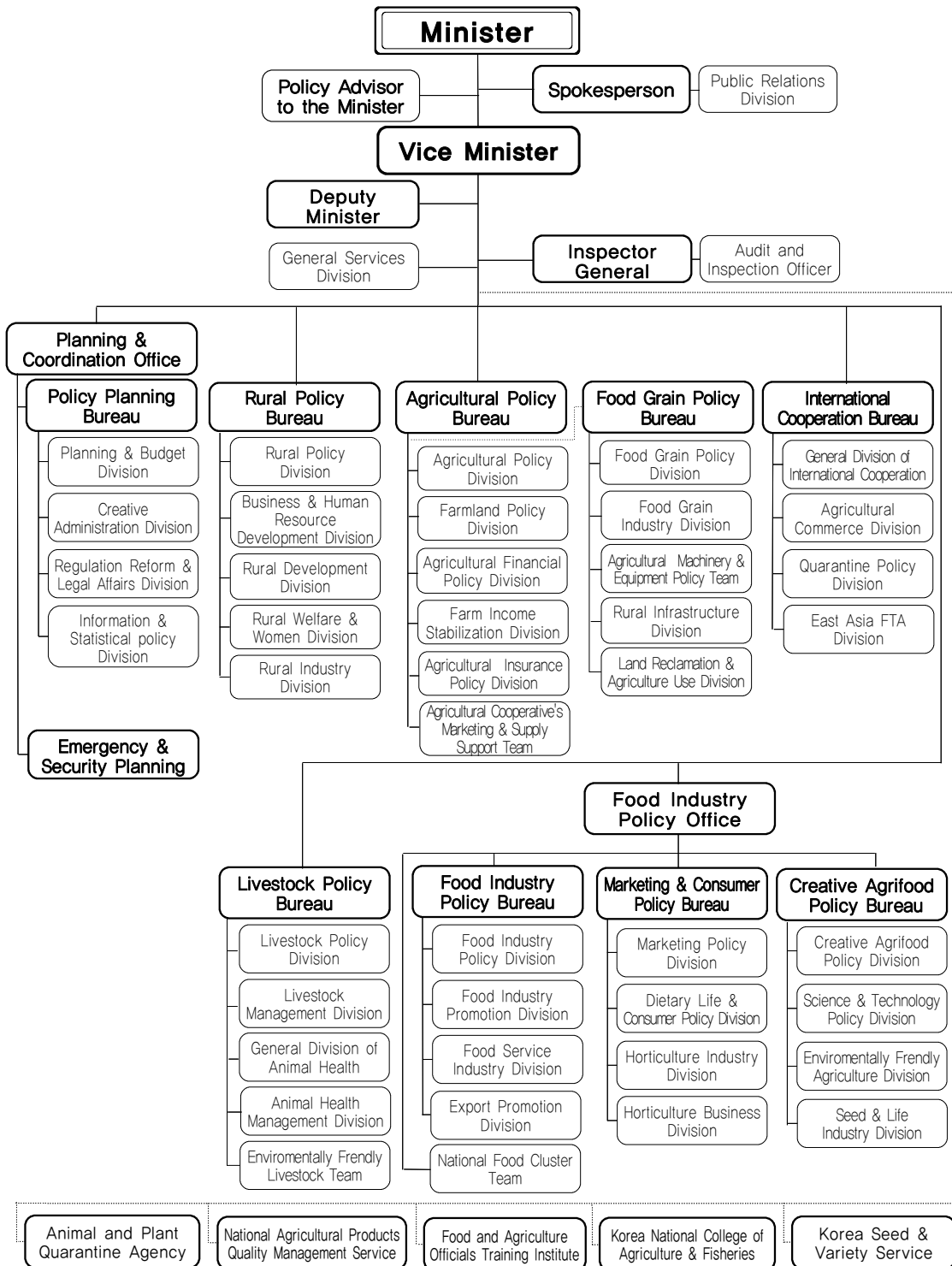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 Fisheries

Educating college students for enrich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the agro-fisheries sector; Providing professional training and guidance for the college graduates to assist career development in the agro-fisheries sector; Providing business-incubation environment for the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ies in agricultur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Responsible for the examination & registra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for the protection of Plant Breeder's Right(PBR) and the production & distribution of nationally certified seeds in the four staple crops(rice, barley, wheat and soybe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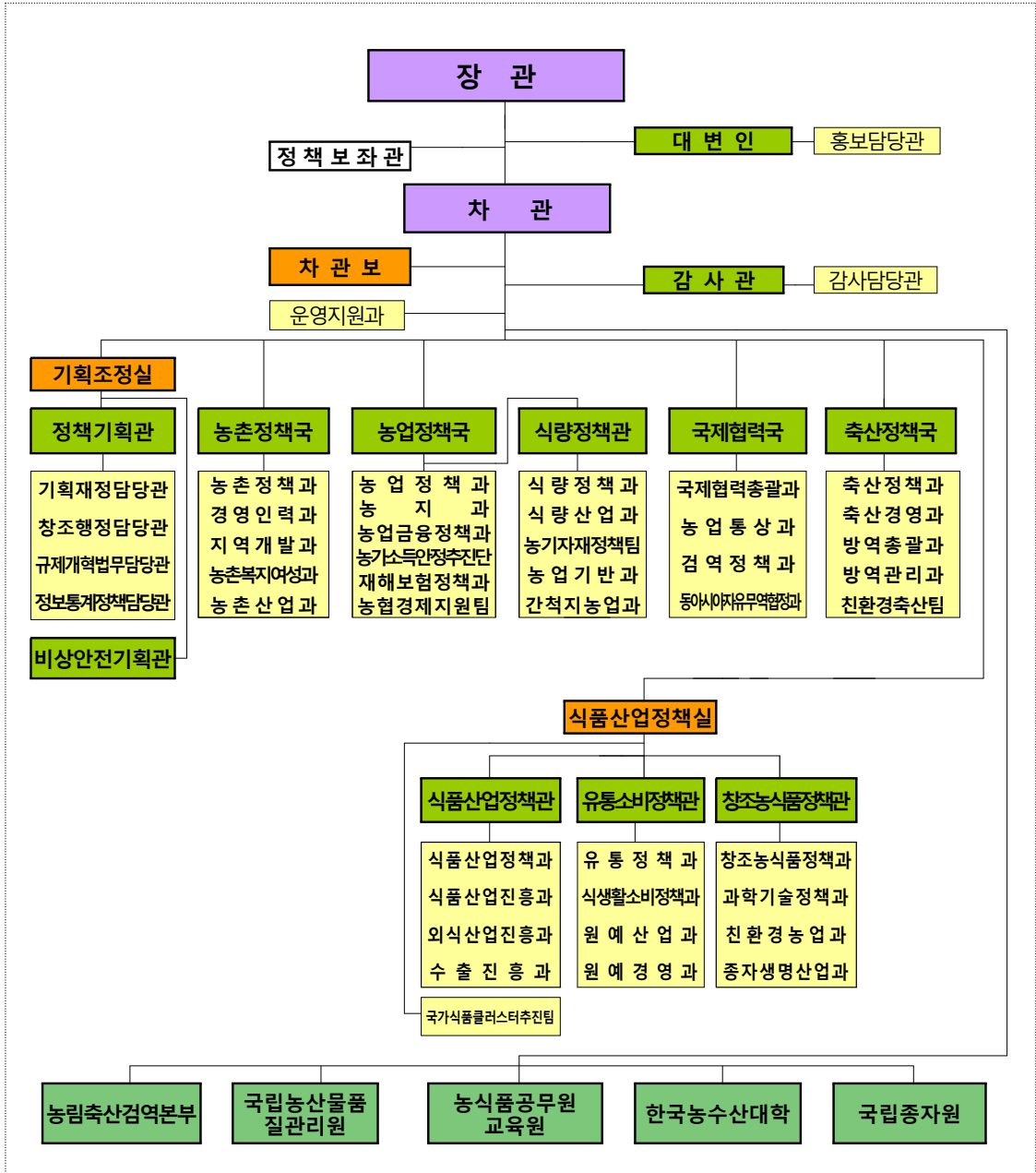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 조 직 :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
- * 한시조직(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17.2.28), 농협경제지원팀('15.10.31),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16.9.11)), 총액팀(농기자재정책팀, 친환경축산팀)포함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특정직		
			소계	고위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지도직	관리운영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교수요원	
				소계	일반직	일반직·연구직																
																						임기제
농림축산식품부	3,242	2	3,197	25	14	8	3	14	90	58	409	794	751	616	157	139	3	115	21	1	4	43
본 부	551	2	549	15	12	2	1	11	32	46	179	148	49	33	8	1		20	3		4	
관 서 소 계	2,691		2,648	10	2	6	2	3	58	12	230	646	702	583	149	138	3	95	18	1		43
농림축산검역본부	938		938	6		6		2	29	7	72	257	284	117	33	94		21	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421		1,421	1	1			1	13	3	132	342	370	430	76	11		4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42		42	1	1				3	1	8	9	6	5	3			5		1		
한국농수산대학	87		44	1			1	1			3	5	8	7	10		3	4	2			43
국립종자원	203		203	1			1		12	1	15	33	34	24	27	33		23				

< 본 부 >

실 국 별	주 요 기 능
대 변 인	주요정책 대국민 홍보, 정보·상황관리, 정책발표 관리 및 브리핑
감 사 관	본부·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감사, 재산등록·심사
운 영 지 원 과	공무원 임용 및 교육, 상훈관리, 서무·문서·경리·용도 및 국유재산 관리, 민원 총괄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농정시책조정, 국회업무, 농식품통계, 예·결산 및 기금총괄, 투융자심사 평가, 변화관리, 조직·정원 관리, 정부3.0, 성과관리, 법무행정, 정보화
	비상계획관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농 촌 정 책 국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 농업인 인력육성, 농촌 지역개발, 농촌 복지, 여성정책, 농촌산업정책
농 업 정 책 국	FTA 대책 수립, 농지관리, 농업자금 관리, 협동조합 정책수립·조정, 농가 소득안정, 농업재해보험·대책, 농협경제지원, 남북농업협력
식 량 정 책 관	식량정책 총괄 및 수급계획, 양곡 매입·공급, 영농대책, 농업기계화,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농업기반정비, 새만금 사업
국 제 협 력 국	국제 통상협력 및 협상, 해외농업 개발, 국제농업협력(ODA), 수입 관리 및 관세제도, 양(다)자간 무역협정, 검역업무 총괄
축 산 정 책 국	중장기 축산정책 수립, 축산물 및 사료수급, 축산물 유통 및 동물 보호, 가축 및 축산물 방역
식 품 산 업 정 책 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 육성 및 학교 급식, 식품가공 활성화, 전통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유통소비정책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직거래활성화, 농식품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 농축산물·식품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관리, 채소류·특용작물·과채류·과수류·화훼류 생산 및 수급안정, 시설원예산업
	창조농식품정책관 기후변화, 녹색성장, 농식품 창조경제, 농식품ICT 융복합, 친환경 농업육성, 농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자산업 육성 및 유전자원 관리

< 소속기관 >

기 관 별	주 요 기 능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및 동물 검역, 동물질병관리, 동식물 위생연구, 동물 약품관리, 해외 병해충 예찰·방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원산지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시험연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축산식품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 교육훈련
한국농수산대학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
국 립 종 자 원	품종보호, 주요 농작물 보급중 공급, 품종육종지원 및 종자관리

- 1948. 11. 4 '농림부' 신설(1차관보 1실 6국 24과)
- 1962. 3. 29 지역사회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농촌진흥청 신설
- 1966. 2. 28 수산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수산청 신설
- 1966. 12. 27 산림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산림청 신설
- 1973. 1. 16 농산, 식량차관보 신설(4인), 감사관 신설
- 1973. 3. 28 '농림부' → '농수산부'(부처 명칭 변경)
- 1974. 1. 28 장관직속으로 각도에 농업통계사무소 설치 (시군에 출장소)
- 1981. 11. 2 농산 식량차관보 폐지, 농정, 식량차관보 유지
- 1986. 12. 31 '농수산부' → '농림수산부'(부처 명칭 변경)
- 1996. 8. 8 '농림수산부' → '농림부'(부처 명칭 변경)
- 1999. 5. 24 1차관보 1실 6국 4관 25과 8담당관
- 2004. 8. 19 국 명칭 변경 : 농업정책 → 농업구조정책, 식량생산 → 식량정책, 농촌개발 → 농촌정책, 농업정보통계관 → 투융자평가통계관
- 2005. 4. 15 실·국 명칭 변경 및 국 신설 : 기획관리실 → 정책홍보관리실, 공보관 → 홍보관리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신설
- 2005. 6. 8 홍보관리관실에 정책홍보상황팀 신설
- 2006. 3. 8 과명칭 변경(담당관→팀) : 행정법무팀, 홍보기획팀, 홍보지원팀, 재정평가팀, 통계기획팀, 정보화기획팀
· 팀 신설 : 재정팀, 맞춤형농정팀
- 2006. 3. 29 국제농업국에 한미FTA 전담 자유무역협정2과 신설
- 2006. 6. 30 차관보 등 23개 직위 →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변경

- 2007. 2. 8 정주지원과 및 축산자원순환과 신설, 농촌진흥과 → 농촌지역개발과로 명칭 변경
- 2008. 2. 29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농림부+해양수산부(수산어업정책)+ 보건복지부(식품산업진흥정책))
 - 조직 : 2실 1본부 3국 7관 4단 52과
 - 정원 : 5,101명(본부 679, 10개 소속기관 4,422)
 - * 총액인건비 5팀 제외
- 2008. 6. 28 식품산업본부에 식품산업정책단 신설, 농업정책국의 소득 정책과와 소득지원과 통합, 자유무역협정2과 폐지
 - 조직 : 2실 1본부 14국·관·단 50과·담당관·팀
 - 정원 : 5,094명(본부 672, 소속기관 4,422)
 - * 총액인건비 6팀 제외
- 2009. 4. 30 녹색성장정책관 및 소비안전정책관 신설, 부서별로 분리 되었던 동일기능의 통합
 - 조직 : 3실 3국, 12관, 49과(팀, 담당관) 및 10소속기관
 - 정원 : 4,810명(본부 675, 소속기관 4,135)
- 2009. 10. 2 한국농수산대학 이관(농진청→농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사회과 명칭, 소속기관장 일부 직급조정(4급→3·4급)
 - 조직 : 3실, 3국, 12관, 49과(팀, 담당관) 및 11소속기관
 - 정원 : 4,901명(본부 675, 소속기관 4,226)
- 2009. 12. 29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기능직 66명 → 일반직 66명)
- 2010. 2. 26 소속기관 조직·정원 확보 【농관원 27(쇠고기이력, 농업경영체), 종자원(정보리)4, 수산과학원(수산동물방역) 1과9명, 한농대(수산양식학과) 3】
 - 정원 : 4,944명(본부 675, 소속기관 4,269)
- 2010. 5. 6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기능직 69명 → 일반직 69명)

- 2010. 9. 20 종자생명산업과 신설(정책통계담당관을 정책통계팀으로 전환) 및
외식산업진흥팀 신설
 - 조직 : 3실, 3국, 12관 49과(팀, 담당관) 및 11소속기관
 - 정원 : 4,944명(본부 675, 소속기관 4,269)
 - * 총액인건비 2팀 제외

- 2010. 11. 18 수산자원사업단 설립(10.11.18)에 따른 수산과학원 조직 및
인력 감축(△1단 1센터, △81명)
 - 조직 : 3실, 3국, 12관 49과(팀, 담당관) 및 11소속기관
 - 정원 : 4,863명(본부 675, 소속기관 4,188)
 - * 총액인건비 2팀 제외

- 2011. 5. 18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기능직 78명 → 일반직 78명)

- 2011. 6. 15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 유통정책관 신설,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를 '원예산업과'와 '원예경영과'로 개편,
동물방역과를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신설)로 분리, 지역
개발과를 '지역개발과'와 '농어촌산업팀'으로 분리, '재해보험팀'
과 '수출진흥팀' 신설(총액인건비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수산물
품질검사원 통합), '농수산식품연수원' 설립(농업연수원+수산인력
개발원 통합), 어업지도사무소를 '어업관리단'으로 품관원 '출장소'를
'사무소'로 명칭 변경
 - 조직 : 3실, 3국, 13관 53과(팀, 담당관) 및 8소속기관
 - 정원 : 4,928명(본부 685, 소속기관 4,243)
 - * 총액인건비 2팀 포함

- 2011. 11. 24 종자검사 업무 일원화 관련 인원 이체(8급 4명, 품관원→종자원)

- 2012. 3. 26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신설(한시조직, '15.2.28)
 ‘수산식품품종관리센터’ 신설(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소속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명칭 변경
 · 조직 : 3실, 3국, 13관 54과(팀, 담당관) 및 8소속기관
 · 정원 : 4,937명(본부 688, 소속기관 4,249)
 * 총액인건비 2팀 및 본부 한시정원 3명 포함

- 2012. 11. 12 ‘농협경제지원팀’ 신설(한시조직, '15.10.31),
 ‘4대강새만금과’를 ‘새만금개발과’로 명칭 변경
 · 정원 : 4,942명(본부 693, 소속기관 4,249)

- 2013. 3. 23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로 부처 명칭 변경
 (수산분야→‘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분야→‘식품의약품
 안전처’로 각각 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로, ‘농수산
 식품연수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조직 : 1차관 1차관보 2실 4국 8관 43과(팀, 담당관)
 및 5소속기관
 · 정원 : 3,204명(본부 529, 소속기관 2,675)
 * 총액인건비 2팀 및 한시조직 2팀 포함

- 2013. 7. 10 국립중자원 ‘제주지원’ 신설
 · 정원 : 3,209명(본부 529, 소속기관 2,680)

- 2013. 9. 12 ‘농촌산업과’ 및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한시조직,
 '16.9.11) 신설,
 ‘행정관리담당관·농촌사회과·새만금개발과’를 ‘창조행정
 담당관·농촌복지여성과·간척지농업과’로 각각 명칭 변경
 · 조직 : 1차관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팀, 담당관)
 및 5소속기관
 · 정원 : 3,237명(본부 538, 소속기관 2,699)
 * 총액인건비 2팀 및 한시조직 3팀(과) 포함

- 2013. 12. 12 공무원 직종개편(6개→4개) :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별정직 축소
 - * 기능직 ⇒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 등) / 계약직 ⇒ 일반직 (한농대 총장, 종자원 원장) 또는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 별정직 ⇒ 일반직(비서 제외)
 통합정원 감축 : △29명(본부 5명, 소속기관 24명)
 홍보인력 보강 : 1명(본부 1명)
 - 정원 : 3,209명(본부 534, 소속기관 2,675)

- 2014. 3. 11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확보 26 【본부 5(친환경축산, 축산물유통, 유기식품), 검역본부 14(식품병해충 전용차량운영, 국경검역), 농관원 2(유기식품), 교육원 1(임기제교수), 한농대 2(교수), 종자원 2(종자품질보증)】
 - 직급조정 : 29(5급2→4·5급2, 6급7→5급7, 사무운영9급20→5급1, 7급7, 8급5, 9급4, 연구사3)
 - 정원 : 3,235명(본부 539, 소속기관 2,696)

- 2014. 6. 25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재해보험팀 및 수출진흥팀 존속기간 3년 연장(2014.6.30→2017.6.30)

- 2015. 1. 6 본부 조직개편 및 '14년 수시직제 증원 24명, 직급상향 9명 반영 【본부 4(6차산업화, 쌀산업육성), 검역본부 6(국경검역강화), 종자원 14(충북지원 신설 13, 종자분쟁 1)】
 - 직급조정 : 9명, 소속기관 인력 11명 본부이체 【(검역본부 5(8급3, 9급 2) 농관원 6(7급1, 8급3, 9급2)】
 - 통합정원감축 28명(본부 5명, 23명)
 - 정원 : 3,231명(본부 549, 소속기관 2,682)
 - 조직개편 국명칭 변경 유통정책관 → 유통소비정책관
 소비과학정책관 → 창조농식품정책관

- 2015. 2. 26 본부 및 소속기관 소요정원 증원 11명(본부 2명, 검역본부 9명), 직급상향 14명 반영(본부 3명, 농관원 11명)
 - 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 신설(한시조직 '17.2.28.까지)
 - 정원 : 3,242명(본부 551, 소속기관 2,691)